

MALAYSIA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MALAYSIA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3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에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점차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프랑스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발간된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뉴질랜드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에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기보연



Contents

| | | |
|------------|---|----|
| 제1장 | 말레이시아 국가개관 | 1 |
| | 1. 말레이시아 개관 | 3 |
|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4 |
| 제2장 |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 7 |
| | 1. 투자진출환경 | 9 |
| | 2. 투자유치정책 | 17 |
| | 3. 투자진출절차 | 19 |
| 제3장 | 말레이시아 현행 세법체계 | 31 |
| | 1. 법인세 | 33 |
| | 2. 개인소득세 | 57 |
| | 3. 원천세 | 68 |
| | 4. MTD(Schedule of Monthly Tax Deductions : 근로자 원천징수) | 69 |
| | 5. 부동산 양도소득세 | 73 |
| | 6. 판매세 | 75 |
| | 7. 서비스세 | 78 |
| | 8. 인지세 | 81 |
| | 9. 연예세 | 82 |
| | 10. 국내소비세 | 83 |
| | 11. 도로세 | 84 |

| | |
|-------------------------------|------------|
| 12. 수입관세 | 85 |
| 13. 기타 각종세금 | 85 |
| 제4장 투자 장려정책 | 87 |
| 1.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89 |
| 2.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101 |
| 3.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12 |
| 4. 환경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 114 |
| 5.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 116 |
| 6.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 119 |
| 7. 정보통신 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121 |
| 8.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 122 |
| 제5장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 123 |
| 1.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요 | 125 |
| 2.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 125 |
| 3. 소득유형별 과세권 배분 | 126 |
| 4. 경감세율(제한세율) | 131 |
| 5. 이중과세 방지 | 132 |
| 6. 무차별(차별금지) | 133 |
| 7. 상호합의 | 134 |
| 제6장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 137 |
| PART I. 서문 | 139 |
| PART II. 독립기업 원칙 | 142 |
| PART III. 방법론 | 145 |
| PART IV. 비교가능성분석 | 147 |

| | |
|--------------------------------------|------------|
| PART V. 사업구조재편 | 150 |
| PART VI. 특정거래 | 150 |
| PART VII. 증거서류 | 156 |
| 제7장 APA가이드라인 | 161 |
| PART I. 서문 | 163 |
| PART II.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 166 |
| PART III. APA의 적용 | 168 |
| PART IV. APA 신청서 처리 | 172 |
| PART V. 양자간/다자간 APA의 신청 | 174 |
| PART VI. APA의 법적 효력 | 175 |
| PART VII.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집행 | 176 |
| PART VIII. APA 정보의 사용, 공개 및 보호 | 182 |
| PART IX. 그 밖의 사항들 | 183 |
| 제8장 부 록 | 185 |
| 유관기관 | 187 |



제 1 장 말레이시아 국가개관

1. 말레이시아 개관
2. 우리나라와의 관계

1 말레이시아 개관

- 국 명 : 말레이시아(Malaysia)
- 국 체 : 입헌군주제(국왕은 9개주의 주왕이 교대로 수임)
- 정 체 : 의원내각제
- 의 회 : 국회는 상하 양원제(하원 5년 임기)
- 면 적 : 330,252km²(한반도의 1.5배)
- 인 구(2012년) : 2,930만 명
- 수 도 : 쿠알라룸푸르
- 1인당 명목소득(2012년) : 10,578달러
- 화폐단위 : 링깃(Ringgit Malaysia, RM), 1링깃은 100센(sen)
- 환 율 : US\$1≒RM 3.06 수준 (2012년말)
- 교 역(2012년) : 수출 US\$2,257억, 수입 US\$1,810억
- 산업구조(2012년) : 1차산업 20.5%, 제조업 24.2%, 건설업 3.9%, 서비스업 등 51.5%
- 인 종 : 부미푸트라(62%), 중국인(22%), 인도인(7%), 기타(1%), 외국인 체류자(8%)
- 주요언어 : 말레이어가 공용어이나, 영어가 널리 통용
- 종교 : 말레이인은 이슬람교가 국교이나,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
- 시 차 : 그리니치 표준시+8시간(한국보다 1시간 늦음)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기후, 연평균기온 27℃, 연평균 강우량 2,410mm

가. 관계 개요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관계에 있어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도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1957년 8.31.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리나라는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이 1962.6.1일,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1964.3.31일에 각각 개설되었습니다.

1980년 한국을 경제개발의 모델로 삼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교역·투자·인사교류 등 양국관계가 꾸준히 증대하였고, 1990년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도 선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국제적 지위도 격상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다소 변화하였습니다.

1962년 12월 양국 간 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 1983년 9월 이중과세 방지협정, 1988년 4월에는 상호 투자협정 등이 체결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대말레이시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97년 고건 국무총리, 98년 김대중 대통령 등 우리나라 정상급 인사의 잇따른 말레이시아 방문 및 93년 마하티르 총리, 96년 안와르 부총리, 99년 하미드 외교장관, 2000년 마하티르 총리, 2001년 살라후딘 국왕 등 말레이시아 정상급 인사의 방한 등으로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아울러 2005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및 2007년 나집 부총리의 방한 등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국관계의 발전 및 심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역확대, 기술협력 증대, 현지 합작투자 강화 등이 필요하며, 양국 국민 간 이해증진을 위해 문화행사 개최, 한국연구소 설립 및 지원 등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도 필요합니다.

나. 교역 동향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투자가 본격화된 시점을 전후해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교역 규모는 매년 20% 이상 확대되어 왔으나, 97년 하반기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수입 억제 정책으로 수출입이 감소되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8년까지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이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수입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對 말레이시아 수출은 78억 3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 대비 24.3% 증가하였으며, 2012년의 對 말레이시아 수입은 97억9,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 대비 6.4%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교역량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컸던 2009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수출 | 5,794 (1.6) | 4,325 (-25.4) | 6,115 (41.5) | 6,275 (2.6) | 7,803 (24.3) |
| 수입 | 9,909 (17.4) | 7,574 (-23.6) | 9,531 (25.8) | 10,468 (9.8) | 9,796 (-6.4) |
| 수지 (US\$) | -4,115 | -3,249 | -3,416 | -4,193 | -1,993 |

자료원 : KOTRA

다. 교역 품목

말레이시아의 경우 공업화 수준이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반면, 원주, 천연가스, 주식, 목재 등 세계적인 자원 보유국으로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양국 간 교역확대의 여지는 매우 큰 편입니다.

2013년 1분기에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경유, 직접회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냉연강판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부품, 철강제품,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장치산업 기반의 제품입니다.

2013년 1분기에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천연가스, 원유, 중유, LPG 등 화석연료 자원과 직접회로 반도체, 컴퓨터 부품 등 전기전자 부품이 있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수입한 품목으로는 천연가스, 중유, 직접회로 반도체, 컴퓨터 부품 등 전기전자부품이 있습니다.



제 2 장 말레이시아 투자환경¹⁾

1. 투자진출환경
2. 투자유치정책
3. 투자진출절차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내 해외투자정보에서 발췌

1

투자진출환경

가. 개요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전형적인 국가로 외환거래 및 과실 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 규제 철폐는 물론 투자 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개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레이시아는 영어 상용 지역으로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투자대상국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여건상의 장점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영어를 사용하며, 고속도로, 철도, 항구 등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팜오일, 목재, 실리콘, 석유, 가스, 고무 등의 원자재가 풍부합니다.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정치상황이 안정적이며, 부패지수도 낮은편으로 정부의 강한 투자유치 의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편의를 많이 보여주며 이점이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으로 이슬람 국가간 수출입이 타국보다 용이한 편이며, ASEAN국가간 수출입도 원활한 편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 메이커가 있고, 폐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장점 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담당기관인 투자진흥청(MIDA)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지역본부, 물류조직, 콜센터, 국제조달 등) 강화를 위해 투자청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특히 지역본부나 본부 물자조달 사무소 지위를 획득할 시 10년간 소득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회 인프라시설

1) 산업 부지

가) 공업단지

말레이시아에는 주경제개발공사(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 SEDC), 지역진흥청(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RDA), 항만당국과 시 정부 등의 정부기관에 의해 개발된 200여 곳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개발하는 공단 이외에도 특정 주의 경우에는 민간 개발업체들이 개발한 다수의 공단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단의 입주비용 및 임대 조건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나) 자유산업지역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s, FIZ)은 주로 수출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지역입니다.

자유산업지역(FIZ)의 목적은 수출지향 업체들에 대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자재, 컴포넌트, 부품, 기계류와 장비 등의 통관절차를 최소화하고 면세 수입을 허용하며 또한 완제품 수출 절차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Sungai Way, Hulu Kelang, Kinta, Jelapang II, Perai, Bayan Lepas, Sama Jaya, Telok Panglima Garang, Peringgit I, Peringgit II, Peringgit III, Tanjung Kling 및 Pasir Gudang 지역에 13개의 자유산업지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산업지역(FIZ)의 입주대상업체의 입주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 원자재/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그러나 정부는 자유산업지역(FIZ) 입주 업체에 대해 가능하면 말레이시아산 원자재/부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승인된 보세제조창고

자유산업지역(FIZ)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유산업지

역(FIZ)과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회사는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세제조창고(LMW)는 자유산업지역(FIZ) 공장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통상적인 보세제조창고(LMW) 설치 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제품 전체를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회사
- 원자재/컴포넌트를 주로 수입하는 회사

라) 관세 납부

자유산업지역(FIZ)과 보세제조창고(LMW)로부터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s, PCA)이라 불리는 국내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된 상품(담배, 주류, 자동차는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 a) 주관세지역(PCA)에서도 생산되는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공통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에 상응하는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 b) 주관세지역에서도 생산되나 국내부품 함유율이 51% 이상인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5%의 종가세가 수입관세로 부과됩니다.
- c) 주관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3%의 종가세가 부과됩니다.
- d) 제조업부문에서 사용될 원자재/부품, 기계류와 장비와 같은 중간재에 대해서는 주관세지역의 제조업체도 수입관세 전액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력 공급

말레이시아 전역에 걸쳐 풍부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경우 전력은 테나가 국영기업(Tenaga Nasional Berhad, TNB)에 의해 공

급되며, 말레이시아 동부의 사바 주는 사바 전력공사(Sabah Electricity Sdn. Bhd, SESB), 사라왁 주는 사라왁 전력공급공사(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 SESCO)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전전압은 500kV, 275kV와 132kV이며, 배전전압은 33kV, 22kV, 11kV, 그리고 415V 3상 또는 240V 1상이며, 시스템 주파수는 50Hz +/- 1%입니다.

또한 테나가 국영기업(TNB)은 생산 공정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업체를 위해 Total Energy Solution이란 이름 아래 전기와 증기, 냉수(chilled water)를 패키지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클림 고도기술단지(Kulim High Technology Park, KHTP)는 지역 최첨단의 환상체(ring formation)방식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무정전 전력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보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하이테크산업 육성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사업에 필수적인 엄격한 전력공급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용수 공급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상수도공급 문제는 주 정부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상수도공급의 개발, 운영과 관리를 관장합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수 처리된 수도물을 24시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수도요금은 모두 사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수도요금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통신 서비스

5개 유선통신망 사업자와 다른 통신망시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말레이시아의 유, 무선 및 위성통신 기반시설은 음성, 영상, 데이터와 기타 첨단 통신 서비스를 망라하는 모든 국내외 통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3백만 명을 상회합니다. 유선과 이동통신망외에도 초소형 위성통신 장치(VSAT)와 위성을 이용한 육상통신과 선박통신서비스도 제

공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6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s)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총 320만 명에 이릅니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로는 시장점유율 58%인 TM Net과 시장점유율 23%인 Jaring이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 시설 면에서는 음성 및 데이터의 대용량, 고속 전송을 위한 전송광섬유, SDH, ATM, ADSL 기타 광대역 무선통신이 구축되어 있어 현대적인 완전디지털 통신망을 통한 전범위의 음성, 데이터와 영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멀티미디어 슈퍼코리도(MSC)에서는 최고 10GB 용량의 대역폭이 제공됩니다.

말레이시아는 FLAG, SE-MA-WE, 중미, 일미 Measat과 Intelsat 등의 위성 컨소시엄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역폭 수요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전지역에 ADSL, IP, VPN과 ATM과 같은 중급과 고급기술을 이용한 통신망도 광범위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시내, 시외, 국제전화와 전용회선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다이얼업(dial-up) 이용요금과 국제전화요금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5) 항공화물 운송시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교차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여 환적센터로서 특히 매력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시설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5대 국제공항은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셀랑고르 주 세팡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현재 연간 2500만 명의 여객처리능력과 3백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연간 여객 6천만 명과 화물 3백만 톤, 그리고 그 후에는 연간 1억 명의 여객과 5백만-6백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25,00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공항으로는 페낭국제공항, 말레이시아 반도의 랑카위 국제공항, 사바 주

의 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 사라왁 주의 쿠칭국제공항이 있습니다.

6) 항만시설

교통부는 7대 연방항만, 즉 말레이시아 반도의 클랭 항, 페낭 항, 파시르 구당의 조호르항, 탄중 펠레파스 항, 쿠안탄 항, 과케마만 항과 사라왁 주의 빈톨루 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빈톨루 항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액화가스 전용항이며, 케마만 항은 석유회사들의 공급기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연방항만에는 컨테이너화물과 드라이 벌크 화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물을 하역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항만정책은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공급 주도적 정책, 즉 항만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정체 발생 없이 선박이 대기하지 않고 입항 즉시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화물집중정책, 즉 클랭 항을 전국 화물 물동량의 집중항이자 지역의 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하여 가능한 한 말레이시아 내 지선 항만 역할을 하는 다른 항만들의 화물이 클랭 항을 통해 혼적(consolidation)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탄중 펠레카스 항을 말레이시아 남부지역의 환적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7) 화물운송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회사가 컨테이너운송, 일반화물운송, 창고보관, 선박급유(bunkering), 배송 관련 서비스, 항만에서의 통관, 컨테이너 수리, 대여와 보수 유지 등의 포괄적인 컨테이너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 지점과 사무소망을 통해 고객과 화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화물운송업체들은 전세계에 걸쳐 해외 대리점 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컨테이너 운송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가 개발부(Ministry of Entrepreneur Development) 산하 상용차 허가국(Commercial Vehicle Licensing Board, CVLB)을 통해 국내 내륙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62개의 운송업체가 다양한 화물운송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물종류에 맞게 개조된 차량을 포함해 각종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 다양한 차량군을 보유하고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몇몇 업체는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위치 추적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반 컨테이너화물을 국내 접근 가능한 장소 어디에건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운행하는 폐색지선철도를 이용한 철도운송 서비스(Block Rail Feeder Service)와 원격지 고객을 위한 정기 화물선 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도 가능합니다.

나) 운송주선

말레이시아 전역에 수백 곳의 복합운송업체(freight forwarding) 대리점들이 분포되어 있어 화물의 국내운송 뿐 아니라 해외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국제운송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복합운송업체들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통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8) 고속도로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이 말레이시아의 도시간 고속도로의 설계, 건설, 관리감독, 운영과 보수유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속도로는 쾌적한 도로환경과 모든 주요도시와 개발유망지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고속도로와 페낭브리지와 쿠알라룸푸르-카락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도로로서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9) 철도운송 서비스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Keretapi Tanah Melayu Bhd.(KTM)은 정부가 전체지분을 소유하고 공사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입니다. KTM은 말레이시아 최대의 수송기관으로서 곡물에서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KTM은 버터워스(Butterworth)의 북부 터미널부터 남부의 조호르 주, 파시르 구당(Pasir Gudang)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반도 전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북부는 페낭 섬의 부두와 항만시설까지 북부선로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10)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 MSC)는 아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996년에 처음 구상된 MSC는 약 1000개 멀티미디어와 통신상품, 솔루션, 서비스와 연구개발전문 다국적기업, 외국기업과 말레이시아 국내기업이 입주해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ICT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한 750 평방킬로미터 면적의 MSC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활발한 기업 활동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이버법, 정책과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MSC 다음의 도약(Next Leap) 계획에 의한 MSC의 말레이시아 전역 확산에 따라 현재에는 MSC의 지정지역이 ‘페낭 사이버시티 1’로 알려져 있는 플라우 피낭(Pulau Pinang)의 바얀 레파스(Bayan Lepas) 자유무역지역 및 케다주의 쿨림 하이테크단지(Kulim High Tech Park)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북부 주들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이버시티 지위(cybercity status)를 부여받아 시범 MSC 프로젝트를 본보기로 한 역동적인 ICT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SC는 세계 전역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

였습니다.

MSC의 사업추진주체는 강력한 전권을 부여받은 “원스톱 기구”인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C)로서 MSC와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MSC)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멀티미디어 개발공사 (MDC) Tel:603 8315 8000 또는 이메일 info@mdc.com.my에 문의하거나 MDC의 홈페이지 www.mdc.com.my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정책

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정책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로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거나, 또는 세제상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로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 소비세의 면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상세한 최신정보 등은 MIDA 홈페이지 (<http://www.mida.gov.my>)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나. 외국인투자제한

1) 노동집약산업의 제한

말레이시아내 심각한 노동 부족으로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른 고부가가치 또는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하여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RM 55,000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허가나 투

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 가. 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지분소유비율 제한

종전에는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의 한도는 수출 정도에 따라 결정 되어졌으나, 1998년 7월 31일부터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의 신규 투자, 투자 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를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비중에 관계없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회사가 생산능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조립, 전기배선, 인쇄 및 철강 서비스 센터와 같은 특정 활동과 제품은 지분제한 지침이 적용되었으나 2003년 6월 17일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습니다.

다만,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 내국인지분의 인종간 강제배분

말레이시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미푸트라(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지칭)의 경제적 자립도 제고 도모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종간 지분을 강제 배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지분 | 내국인 지분 | |
|--------|--------|--------|
| | 부미푸트라 | 비부미푸트라 |
| 70% 이상 | 잔여분 | - |
| 70% 미만 | 30% | 잔여분 |

3

투자진출절차

투자진출절차는 1단계 제조프로젝트 승인, 2단계 회사설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 1975년 산업조정법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ICA)은 제조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조정법에 따라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허가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허가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하며,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은 산업 발전의 추진과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입니다.

산업조정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조활동”이라 함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달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무리처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 및 개조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가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과 관련된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이라 함은 회사의 납입자본금, 적립금,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과 손익 처분 계정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음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말합니다.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이란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과 감가상각, 시설의 개수 또는 교체, 자산 가치 감소에 대한 준비금을 제외한 적립금을 말합니다.
 -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할증금을 붙여서 보너스 주식을 발행할 경우 대변에 기입한 금액은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급 상근 근로자”라 함은 통상 하루에 최소 6시간, 한 달에 최소 20일씩, 연 중 12개월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 상근 근로자에는 출장 영업, 엔지니어링, 유지 보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감독을 받고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도 유급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사회 참석만으로 급여를 받는 비상근이사는 제외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 또는 다른 퇴직 수당 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유급 상근 근로자로 봅니다.

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말레이시아 제조부문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그로 인해 노동시장은 인력난을 겪게 되자, 이를 감안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 C/E Ratio)에 기초한 산업 프로젝트 승인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이 RM55,000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허가나 세제상 혜택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는 상기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3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 경우
- 경영, 기술 및 감독지수(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 MTS)가 15% 이상인 경우
-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에 명시된 권장활동을 이행하거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말레이시아 반도 동쪽 회랑(켈란탄 주, 테렝가누 주, 파항 주 및 조호르 주의 머싱지역), 사바 주와 사라왁 주에 소재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확장과 제품 다변화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제품 다변화를 위해 생산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의 설립

1) 사업 운영 방식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
-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
- 1965년 회사법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내설립 법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운영

모든 단독소유권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 등록 법령(Registration of Businesses Ordinance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등록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

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 회사의 설립형태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의 규제를 받습니다. 동 법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등록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회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한 주식회사(회사주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 책임사원의 개인적인 책임이 주식의 액면가와 보유 혹은 인수키로 약정한 주식의 수로 한정됩니다.
- 유한 책임회사(보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 책임사원들이 회사 청산 시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에 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채무책임을 질것을 보증합니다.
- 무한 책임회사 : 책임사원의 책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 유한 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회사의 설립형태는 유한 주식회사입니다. 이러한 유한 주식회사에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ies; Sendirian Berhad, 약칭 Sdn. Bhd.) 또는 주식회사(Public companies; Berhad, 약칭 Bhd.)가 있습니다.

주식자본을 가진 회사로서 회사 정관 및 부속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때에는 개인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권의 제한
- 종업원과 일부 전직 종업원을 제외한 책임사원의 수를 50명으로 제한
- 주식과 회사채의 공모(公募) 금지
- 회사에의 예탁 자금 공모(公募) 금지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사법 26항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주식을 공모(公募)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합니다.
- 주식발행 당일 혹은 이전에 설립 취지서 사본 1부를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합니다.

주식회사는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LSE)가 정한 요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주식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속적인 유가증권의 발행(예를 들어, 우선권 또는 보너스 방식의 발행, 또는 인수에 따른 발행 등)은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요합니다.

2) 회사 설립절차

회사 설립의 첫 단계는 Form 13A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RM30과 함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이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허가되고 제안된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회사명 검색이 가능합니다. (www.ssm.com.my)

- 접촉기관 : 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CCM)
 - 주소 : Tingkat 11-17,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300 Kuala Lumpur
 - 전화 : (603) 4047-6000
 - 팩스 : (603) 4047-6317
 - 담당부서 : Name Search Department

제안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신청인은 예약기간인 3개월 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 정관 및 부속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법규 준수 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 이사 선임 전 이사로 선임될 자에 의한, 또는 법인 설립 전 발기인에 의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회사 정관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합니다.

회사 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합니다.

- 수수료 : 수권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 수권자본금(RM) | 수수료(RM) |
|--------------------------------|---------|
| 100,000 이하 | 1,000 |
| 100,000 초과 ~ 500,000 이하 | 3,000 |
| 500,000 초과 ~ 1,000,000 이하 | 5,000 |
| 1,000,000 초과 ~ 5,000,000 이하 | 8,000 |
| 5,000,000 초과 ~ 10,000,000 이하 | 10,000 |
| 10,000,000 초과 ~ 25,000,000 이하 | 20,000 |
| 25,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 40,000 |
| 50,000,000 초과 ~ 100,000,000 이하 | 50,000 |
| 100,000,000 초과 | 70,000 |

일단 설립증서가 발행되면 회사 정관에 서명한 자와 기타 때때로 회사의 사원이 될 자들은 유한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소권과 피제소권을 갖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은 공동 날인되어 계속 승계될 수 있으며, 토지를 보유할 권리와 청산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가)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 동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 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개인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이거나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공인된 회사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감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자회사의 이사는 통상 70세 이하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외국회사의 등록절차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현지법인 등록절차와 동일하며,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 또는 말레이시아 내 CCM 지부에 Form 13A를 기입하여 30 링깃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한 경우 신청이 허가되고 회사명은 3개월간 예약됩니다.

승인을 얻은 후에 신청인은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국에서 발행된 법인설립증서(또는 그와 비슷한 효력을 갖는 문서)의 인증 사본
- 회사 정관과 부속정관 기타 회사 정관을 구성하거나 정의하는 문서의 인증 사본
- 이사 명부 및 법에서 정한 이들의 신상명세(Form 79)
- 말레이시아인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이사의 권한을 명시한 정관(memorandum)
-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소송서류와 통지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하는 임명장 또는 위임장

- 회사 대리인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법정 신고서(Form 80)

선임된 대리인은 1965년 회사법에 따라 회사가 행해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모든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또는 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등록된 사무소의 현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후 1개월 이내에 연차 사업보고서(Annual Return)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주총 후 2개월 이내에 본사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에 사용된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한 감사필 자산부채 현황표 1부 및 감사필 손익계산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1)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분(持分)에 관한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 신규, 확대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정책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의 한도는 수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998년 7월 3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의 신규 투자, 투자 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물량과 관계없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분제한 완화정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회사가 생산능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플라스틱 병, 필름, 플라스틱판과 비닐봉지),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조립, 전기배선(wire harness), 인쇄 및 철강 서비스 센터와 같은 특정 활동과 제품은 위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특정 지분제한 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2003년 6월 17일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 정도나 당해 제품/활동의 적용대상 제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기업의 확대/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서도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지분 정책은 다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 i) 제조업 허가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하거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 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회사
- ii) 지분 제한 조건을 면제받은 기존 허가업체로서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해 신규로 지분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회사

나) 기존회사에 적용되는 지분(持分)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조건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제한조건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이를 사례별로 심사해서 공적에 근거하여 승인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출조건이 부과되었던 회사도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관세 제품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물량의 100%까지 국내시장 판매를 허용
- 국내공급이 부족한 제품 또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온 5%이하의 공통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부과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80%까지 국내시장 판매를 허용

2) 외국인 투자 보호

말레이시아 정부의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의지에 힘입어 현재 말레이시아를 역외 기지로 삼기 위해 50여 국가의 4,000여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가) 투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특정 지분 참여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프로젝트의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투자 보장 협정

외국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나 수용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
- 투자 분쟁 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의 보장

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는 1978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간 단체인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협의회(AALCC)의 후원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동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태지역 내에서 및 아태 지역을 상대로 교역, 통상, 투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 해결 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으로 인한 혹은 계약과 관련한,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말레이시아 현행 세법체계

1. 법인세
2. 개인소득세
3. 원천세
4. MTD(Schedule of Monthly Tax Deductions :
근로자 원천징수)
5. 부동산 양도소득세
6. 판매세
7. 서비스세
8. 인지세
9. 연예세
10. 국내소비세
11. 도로세
12. 수입관세
13. 기타 각종세금

현행 말레이시아 세법체계는 크게 직접세(개인소득세, 법인세, 협동조합소득세, 석유소득세, 원천세, 부동산양도소득세)와 간접세(판매세, 서비스세, 국내소비세, 연예세, 인지세, 도로세, 수입관세, 수출관세, 각종 부과세)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된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이 과세됩니다.

그러나 거주기업(은행, 보험, 항공,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비거주기업과 비거주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비과세되며, 2004과세연도부터 거주자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2001년부터는 회사에 대해 기존의 부과납세(official-assessment)제도를 대신하여 신고납세(self-assessment)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신고납세제도가 2004년부터는 사업체, 파트너십, 협동조합과 봉급생활자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판매세, 서비스세는 단일세목으로 상품 및 서비스(부가가치)세(GST)로 대체될 예정입니다.(이전부터 대체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유보되고 있습니다.)

1

법인세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ITA 3조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되는 소득이나 해외로부터 말레이시아 내에서 송금한 소득에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회사와 비거주자인 회사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파생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법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1995년부터는 거주자인 회사(은행업, 보험업, 해운·항공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가 말레이시아 내로 송금한 해외송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으며, 은행업, 보험업, 해상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거주 회사는 전세계

소득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업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은 거주자로 간주. 업무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통상 임원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나. 세율

법인세 세율은 25%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2007년이전 27%, 2008년 26%, 2009년 25%로 단계적 인하 추세)

2004년 귀속부터 납입자본금이 RM 250만 이하인 중소기업은 과세소득 RM500,000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초과분은 일반 법인세율(25%)이 적용됩니다. 2009귀속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 우대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2009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SMI; Small & Medium Industries)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사업연도 기준시점에서 일반주식 납입자본금이 RM 250만 미만이고,
 - 말레이시아 거주자
 - 사업연도 기준시점에서 RM 250만을 초과하는 일반주식 납입자본금을 가진 지주회사나 다른 자회사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보험업 법인은 과세소득의 종류에 따라 8%(생명보험기금의 투자수익과 자본이득), 28%(주주자금수익)가 부과됩니다.

다. 비용공제

회사설립비

- 중소기업이 회사의 법정자본금이 RM 250만 미만인 개인회사를 설립시 발생

하는 비용을 공제합니다.

- 다음의 회사 설립비는 사업을 개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설립준비비용과 규약·정관, 설립취지서 등의 인쇄비, 사업전망의 설명 및 홍보비용
 - 회사 등록비와 법정서류구비비용 및 이에 부가되는 요금 및 인지세
 - 예비계약관련 비용 및 이에 부가되는 인지세
 - 사채발행비용 및 인지대 그리고 주식증서과 주권배부서 관련비용
 - 회사인감비용
 - 인수수수료(underwriting commission)

광고비

-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 지출이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광고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비지출이 회사 사업계획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 회사, 제품과 서비스(고객, 채권·채무자, 직원 등에게 사용된)해당해야함
 - 신문, 회사 웹사이트, 광고지 등에서 행해진 활동의 기록

기부금

- 광고와 달리 판매증진 목적을 직접적으로 갖지 않아도 됩니다.
- 기부금의 경우 오직 정부가 승인한 단체관련 기부금만 공제되며, 회사 총소득의 7%까지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접대비

- 접대비는 사업운영에서 필수적으로 판매수익을 유지하거나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해야합니다.
- 접대비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해야합니다.

- 음식, 일종의 유흥 또는 환대의 제공
 - 접대가 장려목적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목적의 숙박 또는 여행 제공
- 직원 접대비
- 직원복리후생비라고도 하며, 회사가 사내매점, 직원 연찬회, 후원여행, 직원가족 축하일 등에서 음식물, 다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전액공제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접대 제공에 부수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50%만 공제 가능합니다.
- 예) 거래처와 몇몇 직원이 참석한 점심모임에서 제공된 접대비 중 직원제공된 분은 50%만 공제가능
- 접대업에 종사하는 회사
- 회사의 사업활동이 고객에 대한 접대의 제공인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정에서의 접대제공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 예) 호텔 또는 식당이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민속공연을 제공하거나, 항공사가 고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경우
- 해외 기업박람회 상업·산업 전시회에서 홍보선물
-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 말레이시아 수출 증대를 위한 것일 것
- 예) 가방, 열쇠고리와 같은 기념품 그리고 행운권 추첨용 카메라, 비행기표 등
- 사업 제품의 홍보용 샘플
- 제품 광고목적으로 샘플로 제공된 회사의 제품은 공제가능합니다.
- 문화 또는 스포츠 이벤트로 제공

- 대중에 공개되고
 - 전적으로 사업증진 목적으로
 - 문화·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십(후원)을 포함합니다.
- 홍보선물 제공
 - 말레이시아 내에서,
 - 광고 및 사업 로고가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 사업판매와 관련된 접대 제공(예규에 따른 분류)
 - 신상품의 출시와 관련한 음식물의 제공
 - 판매제품의 보상 바우처(상품권)
 - 구입한 고객에 대한 행운권 시상품
 - 사내매점에서 거래고객에 제공한 다과
 - 할인권, 상품권, 공연 영화표, 식사·선물권 그리고 현금수령권
 - 일정한도 초과 구매시 무상선물
 - 적립포인트 일정에 따른 보상 선물
 - 판매목표를 달성한 딜러에게 제공되는 여행 경비
 - 부동산개발업자의 무료 유지비용 또는 보수적립금 기부
 - 직원에게 제공한 말레이시아 내 가족방문비
 - 2007년부터 사용인, 고용인 그리고 직계가족에게 1년에 한번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족행사와 관련된 방문여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불량채무에 대한 비용공제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됩니다.
 -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채무가 사업 판매로부터 발생하여야 함

- 채무가 부분/전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어야 함
 - 해당 연월일이 속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량으로 판단되는 부채
- 채무의 인수
 - 사업거래 채무(미수금 등)는 회사가 보유한 신용의 판매(채권 매각 등)로부터 발생된 경우 공제 가능. 타 사업의 인수로부터 발생한 거래채무는 세무상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유지보수비(33(1)(c)조)
 - 과세대상 기간 중 발생하는 총사업소득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내부지·공장 시설장치, 기계 또는 고정자산의 보수비용
 - 비품, 기구 또는 기타 유사항목의 리뉴얼, 수리 또는 개조 비용으로서 Schedule 3에 따른 자본공제 및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에 대한 비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내부지, 건물, 구조물 또는 영구적 장치, 제조시설 또는 기계, 고정시설 등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비용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자본공제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수리와 개선
 - 수리는 비용공제 가능하지만 개선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선비용은 자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취득자산의 수리
 - 자산을 취득하고 즉시 수리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초기수리비용은 자본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 자산교체(전체 또는 일부)
 - 수리는 비용공제가 가능하지만 자산취득의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자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수리는 전체 자산의 부분을 대체하여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자산의 재건축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에 상당하는 것입니다.

- 34(6)조에 따른 특정 공제
 - 사업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정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 법조항 | 항목 | 적용조건 | 법정한도 |
|----------|--|--|---------------------|
| 34(6)(c) | 소득세법 Schedule 2의 계산에 따른 광산업자의 채굴비용 | - | - |
| 34(6)(d) | 재식 농장(replanting farm)의 지출 비용 (예) 구목 제거비용, 노동비, 배수개선비 등 | (i)동일작물 대체 및 동일 토지구획 생산에 소요된 재이식 비용 (ii)토지취득 및 농업공제가 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비용을 제외 | - |
| 34(6)(e) | 장애인을 위한 장비의 제공 및 구내시설의 개조 또는 개선 | 장비, 구내시설의 개조 또는 개선은 장애인 직원이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조하는데 필수적이어야 함 | - |
| 34(6)(f) | 도서를 말레이어로 번역 및 출간 | (i)문화, 문학, 직업, 과학 또는 기술서적 (ii)말레이시아 국문학협회의 승인 | - |
| 34(6)(g) | 대중이 이용가능한 도서관 시설의 제공(현품과 현금) 또는, 공공도서관, 학교 및 고등교육 기관 도서관에 현금기부 | - | 1과세연도 RM 100,000 |

| 법조항 | 항목 | 적용조건 | 법정한도 |
|-----------|---|---|----------------------------------|
| 34(6)(h) | 공공문화설비 및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자선 혹은 지역사회프로젝트 기부 | (i)장관의 승인 (ii)교육, 건강, 주택, 환경보존 및 보호, 빈자소득 증진, 기간시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등에 해당할 것 | - (회사만 공제) |
| 34(6)(ha) |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중이 이용 가능한 기간시설의 공급 | 장관의 승인 | |
| 34(6)(i) | 직원을 위한 어린이보호센터의 제공과 유지 | 오직 수익적지출만 | - |
| 34(6)(j) | 뮤지컬 또는 문화 단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한 비용 | 재정부장관의 승인 | - |
| 34(6)(k) | 예술, 문화 또는 전통 활동을 후원하는데 발생한 비용 | 정보통신문화부장관의 승인 | 50만링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20만 링깃까지 |
| 34(6)(l) | 학위(학사, 석사, 박사)가 수여되는 학업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 장학금에 수업료와 생활비 포함된다. | (i)종일수업을 받는 학생 (ii)학생이 학습을 위한 생계수단이 없어야 함 (iii)학생부모나 후견인의 월소득이 5,000 링깃을 초과하지 못해야 함 (iv)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교육기관일 것 | - (회사만 공제) |
| 34(6)(m) |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으로서 인증받기위해 발생된 수익적 지출 비용은 인증서가 발행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말레이시아 표준부 인증 획득 | - (회사만 공제) |

| 법조항 | 항목 | 적용조건 | 법정한도 |
|-----------|---|------------------------------------|---------------|
| 34(6)(ma) | <p>다음 공인을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수익적 지출</p> <p>(i)승인된 품질시스템과 표준</p> <p>(ii)할랄 인증</p> <p>- 지출된 비용은 이중공제가 허용된다.</p> <p>- 비용은 인증서가 발행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p> | 인증기관은 장관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 - (회사만 공제) |
| 34(6)(n) | 말레이시아 내 직무훈련의 제공에 발생한 비용 | 훈련은 거주자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용주가 아니어야 한다 | - |
| 34(6)(o) | <p>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데 발생한 비용</p> <p>예) 회의비, 워크샵, 세미나</p> | 말레이시아 표준부 장관의 승인 | - (회사만 공제) |

라. 이중 비용공제

말레이시아 상표 제품의 광고비

- 적용기준
 - 말레이시아인이 최소 70%이상 소유한 납입자본금을 가진 말레이시아 설립회사일 것
 - 상표명은 회사 또는 그의 관계회사(일반주식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되거나 또는 상호소유)가 소유하고 말레이시아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되었을 것
 - 제품은 수출품기준(총 판매액의 20%이상이 수출)에 해당할 것
 - 비용의 지출은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한 것
- 지출의 형태
 - 호스트 웹사이트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인터넷
 - 말레이시아에서 인쇄된 잡지와 신문
 - 인가된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
 - 말레이시아 내 광고판으로서 당국이 승인한 광고
 - 말레이시아에서 인쇄된 상업 출간물에 광고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승인된 국제스포츠행사의 후원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승인된 국제무역회의·박람회의 후원
- 등록된 말레이시아 상표의 소유자를 위해 말레이시아 상표명제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불한 전문가 감정료 일 것. 이때, 전문가 감정료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한 것일 것

승인된 국제 무역박람회

- 적용기준
 - 무역박람회는 국제 무역 산업 장관의 승인을 거친 것
 - 수출의 증진을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것
 - 비용은 국제무역박람회 참여에 대한 것(33조에 따라 공제가능한것)
 - 전시비용은 제외

승인된 훈련

- 적용대상
 - 제조회사
 - 비제조 회사
 - 호텔 또는 여행사
 - 비고용 장애인의 훈련
- 적용기준
 - 회사는 다음기관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을 것
 - 승인 훈련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승인당국
 - 훈련기관이 수행하는 훈련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개인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확인하는 훈련기관
- 승인당국은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 재정부, 문화예술관광부 등을 포함합니다
- 지출의 형태
 - 훈련교관/지도자에 대한 비용공제 (최대 400링깃 / 1일)
 - 훈련생에 대한 비용공제 (국내훈련 최대 100링깃 / 1일)
(해외훈련 최대 200링깃 / 1일)
 - 소비성 훈련 물품과 비자본적 비용
 - 이수과정 및 훈련 수수료
 - 이코노미급 여비

- 승인된 기숙 프로그램의 전일(Full time) 훈련교관에 대한 보수
- 훈련 수행을 위한 자문 비용
- 만약 훈련이 2 과세기간에 걸친다면, 이중공제 혜택은 각 연도 발생비용에 한합니다

해고자 고용

- 이전 및 현 고용주는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만 하거나(20% 지배) 같은 그룹에 속한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된 직원은 이전 직원을 대체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직원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말레이시아 국민이며 거주자 일 것
 - 직원의 이전 고용은 2008.7.1.일 후에 종료되었으며, 2009.3.10.일과 3010.12.31.일 사이에 전일근무 기준으로 고용되었을 것
 - 고용의 종료는 인적자원부의 노동청장에 등록된 것일 것
- 보수지급의 형태
 - 보수의 지급(각 직원당 월 10,000링깃의 급여, 임금, 수당으로서 12개월간)

수출신용보험료

- 적용기준
 - 보험료
 - 수출신용보험

화물비

- 적용기준
 - 화물비

- 라탄과 목재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
- 라탄과 목재품의 제조와 관련
- 재목(Sawn timber), 합판은 제외

수출화물 보험료 지급

- 적용기준
 - 수출품 화물에 대한 보험료 지급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보

수입화물 보험료 지급

- 적용기준
 - 수입품 화물에 대한 보험료 지급
 -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보

소규모 사업자 대출에 대한 지급할 이자

- 적용기준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은행의 승인증명서
 - 이자는 우선 33조에 의해 공제되어야 함

제조 및 농업생산품의 수출 장려

- 당 공제는 제조와 농업회사에 적용 가능
- 적용기준
 - 33조에 따라 공제 허용된 비용
 - 39(1)조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닐 것
 - 본래 그리고 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농업 생산, 제조, 생산, 조립, 공정, 포장, 등급, 분류된 수출품의 장려 목적이어야 합니다

- 지출의 형태

- 말레이시아 해외 매체에서의 선전과 광고
- 운반비를 포함, 말레이시아 해외에서 고객에게 샘플의 무료 제공
- 수출시장 연구 또는 수출마케팅 정보의 획득
- 해외 유망고객에게 제품 또는 농업생산물 공급 입찰준비
- 회사 대리인의 해외 여비는 필히 제품 또는 농업생산품을 회사를 대신하여 협상 또는 계약체결 완료의 목적으로 부담한 것이거나, 무역박람회 또는 장관이 승인한 무역 및 산업 전시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서 그 실 지출비용이 다음 적용을 받습니다

(a) 최대 1일 300링깃의 숙박료 및

(b) 최대 1일 150링깃의 체류비로서

말레이시아 출발부터 시작하여 말레이시아 귀국으로 종료

- 회사의 제품 또는 농업생산물의 판매용으로 제공된 제품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기술정보를 제공(구매 후에 구매자에게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비용은 제외)
- 해외 무역박람회 및 무역·산업전시회의 전시품 제공
- 수출관련 대중관련 업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기 언급한 비용 이외의 장관이 승인한 해외 무역박람회 및 무역·산업 전시회의 참여비용
- 말레이시아 수출의 장려를 위한 해외 판매지점의 유지비용
- 수출품 품질을 위한 포장디자인에 발생된 전문가 자문료와 국내 전문가 고용비

회사제품의 수출 장려 - 가상 무역쇼, 포털 무역, 창고 유지비

- 적용기준

- 33조에 따라 공제 허용된 비용

- 39(1)조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닐 것
 - 본래 그리고 주로 회사제품의 수출 장려 목적이어야 합니다
- 지출의 형태
- MATRADE²⁾가 검증한 국제 가상무역쇼에의 참여
 - MATRADE가 검증한 국내제품의 홍보를 위한 무역 포털 참여
 - 해외 창고의 유지비용

서비스 수출의 장려

- 적용기준(1999 소득세)
- 33조에 따라 공제 허용된 비용
 - 39(1)조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닐 것
 - 본래 그리고 주로 서비스의 수출 장려 목적이어야 함
- 지출의 형태(1999 소득세)
- 서비스 수출 목적의 시장조사 비용
 - PSDC Sdn Bhd³⁾가 검증한 국제계약 입찰에 사용된 모델을 포함한 입찰준비
 - PSDC Sdn Bhd가 검증한 국제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모델의 준비
 - 입찰 또는 경쟁용 모델 제작 회사에 대한 지급
 - 기술적 정보 준비
 - 회사의 대표직원의 항공료
 - 해외체류기간 중 실비 : 1일 최대 300링깃의 숙박료 및 최대 150링깃

2) MATRADE :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이 풀네임이며 주로 말레이시아 수출업자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역할로서 우리의 무역협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3) Professional Services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의 체제비

- 서비스수출 장려를 위한 해외 판매지사 운영비
- 해외 미디어에서의 선전과 홍보

- 적용기준(2002 소득세)

- 33조에 따라 공제 허용된 비용
- 39(1)조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닐 것
- 본래 그리고 주로 서비스의 수출 장려 목적이어야 함

- 지출의 형태(2002 소득세)

- 입찰목적으로 확인되는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 연구
- MATRADE가 승인한 국내·해외 무역·산업 전시회에 참여
- MATRADE가 승인한 MPT(Malaysian Permanent Trade)와 해외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 참여
- 회사 대표직원의 해외 항공료
- 해외체류기간 중 실비 - 1일 최대 300링깃의 숙박료 및 최대 150링깃의 체제비. 말레이시아 출발시 시작하여 귀국시 종료

전문서비스 수출의 장려

- 적용기준

- 33조에 따라 공제 허용된 비용
- 39(1)조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닐 것
- 본래 그리고 주로 전문서비스의 수출 장려 목적이어야 합니다

- 지출의 형태

- 입찰목적으로 확인되는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 연구
- 입찰목적으로 입찰준비

- 입찰 및 경쟁용 모델을 만드는 회사에의 지급
- 시장조사
- 기술정보의 준비
- MATRADE가 승인한 국내·해외 무역·산업 전시회에 참여
- MATRADE가 승인한 MPT와 해외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 참여
- 회사의 대표직원이 전문서비스 수출 장려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외에서 부담한 항공료
- 해외체류기간 중 실비 - 1일 최대 300링깃의 숙박료 및 최대 150링깃의 체제비. 말레이시아 출발시 시작하여 귀국시 종료
- 전문서비스 수출 장려를 위한 해외 판매지사 운영비
- 해외 미디어에서의 선전과 홍보

여행산업의 장려

- 적용기준
 - 33조에 따라 공제 허용된 비용
 - 39(1)조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닐 것
 - 본래 그리고 주로 말레이시아로의 여행 장려 목적이어야 합니다
- 지출의 형태
 - 해외 미디어에서의 선전과 홍보
 - 배달비용을 포함한 해외 홍보책자, 잡지와 가이드북의 제공
 - 수출용 해외 시장조사(문화예술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 회사의 대표직원의 해외 항공료
 - 해외체류기간 중 실비 - 1일 최대 300링깃의 숙박료 및 최대 150링깃의 체제비. 말레이시아 출발시 시작하여 귀국시 종료
 - 문화예술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해외여행박람회, 회의 또는 포럼개최
 - 말레이시아 관광 장려를 위한 해외 판매지사 운영비

품질시스템, 표준, 할랄 인증

- 적용기준
 - 공인된 품질시스템과 표준 또는
 - 할랄(HALAL) 인증

장애인 직원 보수

- 적용기준
 -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
 - 정상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연구비

- 적용기준
 - 1986 투자진흥법(PIA)에서 승인한 산업구조조정 중인 회사로서 10년 이내 발생된 그러한 비용
 - 인가된 연구회사·기관, 연구개발(R&D) 회사, 계약 연구개발회사가 제공한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지급
 - 인가된 연구회사·기관에의 현금기부
- 지출의 형태[공적예규(PR) 5/2004]
 - ① 원자재 - 연구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구입 배제
 - ② 인력
 - 오직 기본급만 이중공제
 - 고용연금펀드, 실업급여, 상여, 의료비, 각종 복지혜택 등은 이중공제대상 아님
 - 시간제 근로자는 단위 할당
 - ③ 기술서비스

- 착수한 연구와 관련된 정보 또는 자문을 얻기 위해 연구기관·개인에게 지급한 상담료
- 시험용 장비 사용에 대한 지급
- 분석 서비스와 데이터 평가 공정에 대한 지급
- 다음 조건의 적용을 받음
 - 공제할 비용의 30% 이상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착수된 기술서비스인 경우, 당해 기술서비스 비용은 이중공제 허용
 - 공제할 비용의 70% 초과분이 해외에서 착수된 기술서비스인 경우, 그러한 지출은 이중공제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은 이중공제 허용
 - 해외에서 획득되었으나 말레이시아에서 착수된 기술서비스는 이중공제 허용
- ④ 연구소 방문, 연구과정·세미나 참가에 대한 여비. 여비는 일일수당과 여행비를 포함, 항공여행의 경우, 오직 이코노미급 요율만 허용됨
- ⑤ 일일수당(식비와 숙박 포함)은 인당 최대 400링깃 또는 그보다 낮은 실비
- ⑥ 연구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 운송에 대한 운반비
- ⑦ 연구에 직접 사용된 자동차, 건물, 장비 그리고 기계의 리스대여 또는 유지비
- ⑧ 연구에 직접 사용된 공과금, 전화, 팩스, 문구 등과 같은 기타 수익적 지출 비용

선박 화물비

- 적용기준
 - 선박 화물운송비
 - 제조업자에게 발생된 비용
 - 생산품의 선적
 - 사바와 사라왁에서 말레이시아 반도의 항구로 운송

마. 감가상각(자본공제율)

회사에게는 사업을 구성하는 공장, 플랜트설비, 기계에 대한 자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비용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본공제는 사업과정에서 자산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주어지는 조세 혜택이며, 그 비용은 몇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자산의 획득연도에는 초기공제라고 하는 추가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 고정자산 | 초기공제(%) | 연간공제(%) |
|-----------|---------|---------|
| 플랜트, 기계류 | 20 | 14 |
| 중설비, 중기계류 | 20 | 20 |
| 자동차 | 20 | 20 |
| 사무용장비 | 20 | 10 |
| 공장 | 10 | 3 |

중소기업 회사에 대한 특별공제

- 2009과세연도부터 플랜트와 기계류(컴퓨터, 상품운반에 사용되는 화물트럭, 밴 등 포함)를 취득한 중소기업은 당해과세기간 중 취득금액의 100%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초기공제 20%와 연간공제 80%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소액자산(Para 19A, Sch 3)

- 중소기업이 각 자산의 취득비용이 1,000링깃 미만의 소액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비용은 당해연도에 100% 자본공제된다. 그러나, 한 과세연도에 공제 신청한 총 자본공제는 10,000링깃을 초과할 수 없다. 소액가치자산의 예시에는 컴퓨터, 프린터, 계산기, 주방용품 등이다.

기타 개인회사에 대한 가속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기타 개인회사에게는 2010과세연도에 대한 자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자산 | 초기공제(%) | 연간공제(%) |
|-----------------|---------|---------|
| 플랜트, 기계류 | 20 | 40 |
| 중설비, 중기계류 | 20 | 40 |
| 자동차 | 20 | 20 |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20 | 40 |
| 공장 | 10 | 3 |

- 다음 항목의 플랜트와 기계류 자산을 취득하는 기타 개인회사에게는 높은 금액의 자본공제가 주어진다. 이를 가속공제라고 합니다

- ① 전력장비 : 초기공제 20%, 연간공제 40%
 -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된 플랜트 비용 입증
 - 아래 전력의 질을 통제하는데 전적으로 사용
 - 전력의 질
 - 전력의 질은 에너지 수자원 통신부 장관이 인증
- ② 폐기물 재활용 : 초기공제 40%, 연간공제 20%
 - 회사가 지출한 플랜트 비용 입증
 - 위의 회사란 제조회사를 말함
 - 폐기물 재활용에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 완성제품을 만드는데 있어 폐기물을 추가공정에 투입
- ③ 재생에너지 : 초기공제 20%, 연간공제 80%
 - 회사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된 플랜트 비용 입증
 - 아래 발전에너지에 전적으로 사용

-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에너지
- 발전에너지는 에너지 수자원 통신부 장관이 인증
- ④ 농업부문 : 초기공제 20%, 연간공제 40%
 - 회사가 지출한 플랜트 비용 입증
 - 농업 사업에 사용(임업 배제)
 - 농업부 장관이 결정
- ⑤ 산업화빌딩시스템 부품 생산용 금형:초기공제 40%, 연간공제 20%
 - 제조, 건설회사의 사업목적용으로 사용된 사전 주형 콘크리트
 - 산업화빌딩시스템 부품 생산
 - 제조, 건설 회사의 사업목적용
- ⑥ 컴퓨터, 정보기술장비, 컴퓨터소프트웨어 : 초기공제 20%, 연간공제 40%
- ⑦ 계획 폐기물의 저장, 처치, 제거를 위해 직·간접 사용한 플랜트 및 기계 : 초기공제 40%, 연간공제 40%
- ⑧ 환경보호장비 : 초기공제 40%, 연간공제 40%
 - 아래의 장비와 시설
 - 폐기물 수집과 환경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
 - 표시 및 기록 또는 과도한 오염의 경고
 - 장비 사용의 효율 보장

- 산업건물 공제

| 해당 건물 | 해당 비용 | 공제율 | |
|---------|-------------------|-----|----|
| | | 초기 | 연간 |
| 건설 산업건물 | 발생 건설비용(토지구입대 제외) | 10% | 3% |
| 구입 산업건물 | 매입 시가 | 10% | 3% |

- 특정 산업 빌딩 항목은 10%의 가속 연간공제가 적용되지만, 초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별표(Schedule 3)의 다양한 산업건물 공제

| 항목 | Sch 3 분류 No | 공제율 | |
|---|-------------------|-----|-----|
| | | 초기 | 연간 |
| 1. 공공도로 통행료 징수로 회수할 수 있는 공공도로 건설 | 67A | 10% | 6% |
| 2. 수출입용 상품의 저장용 건물 · 가공, 배부 및 재수출 | 37C | - | 10% |
| 3. 직원기숙사 - 건설건물 조건 : 산업건물이 존재해야함 | 42(1) | 40% | 3% |
| 5. 어린이집 - 건설 및 매입 | 37C | - | 10% |
| 6.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학교 또는 교육기관 - 건설 및 매입 | 42B | - | 10% |
| 7. 산업, 기술 및 직업 훈련소 - 건설 및 매입 | 42C | - | 10% |
| 8. 고전민속보호센터 | PU(A) 143/2003 | - | 10% |
| 9.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입주사 사용 건물 | PU(A) 202/2006 | - | 10% |
| 10. BioNexus 지위의 회사 | PU(A) 374/2007 | - | 10% |

바. 감면

- 거주기업(다만, 은행, 보험, 해운·항공운수업은 제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배당포함)
-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거주해운회사의 소득
- 말레이시아 선박의 시간제나 전세운행으로 말레이시아인 거주자로부터 발생된 대여소득
- 말레이시아에 있는 해운회사로부터 비거주자가 받는 ISO 인증 컨테이너선 임대소득(2001.10.20.부터 적용)
- 비거주 법인이 BAFIA(1989년)법에 의하여 허가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으로부터 받는 이자
- 모터사이클과 자동차경주대회 주최자가 번 소득 중 50% 면세
- 연간 최소 외국인관광객 500명이상을 유치하는 그룹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소득(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
- 국내 패키지여행으로 연간 최소 국내여행자 1,200명이상을 유치하는 여행업으로부터의 소득(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
- 교육부에 승인된 프랜차이즈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비거주 상표권자가 수령하는 사용료
-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의 주관운영으로 얻은 소득. 단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MATRADE)에 의하여 승인되고, 연간 최소 외국인방문자 500명 이상을 유치하는 국제무역박람회일 경우(2002년부터 적용)

사. 신고납부

- 2001년 이후, 법인은 당해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6개월내에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규정된 납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 개인소득세

가. 납세자의 의무

개인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ITRF)작성 및 신고
 - 납세자는 매년 4월30일 이전까지 작성된 신고서를 아래의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 Information Processing Department,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vel 10-18, Tower C, Persiaran MPAJ, Jalan Pandan Utama
 Pandan Indah, 55100 Kuala Lumpur

- 소득과 비용 신고
- 납부해야할 소득세 전산작업
- 회계기록의 보관
- 납부해야할 소득세 납부

나. 기록의 유지

납세자는 7년간 다음의 서류를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EA/EC 서식
- 원시 배당표
- 보험료 영수증
- 장부 구입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기부 영수증
- Zakat(이슬람교 세금 연수입자산의 2.5%) 영수증
- 자녀 출생증명서
- 혼인증명서
- 기타 서류들
- 월급 정산표

다. 신고서식

서식 BE의 작성대상자

- 말레이시아 거주자
- 과세기간동안 사업소득이 없는자

서식 B의 작성대상자

- 말레이시아 거주자
- 과세기간동안 사업소득이 있는자

소득신고서 신고대상 및 제출기한

- 서식 BE : 사업을 하지 않은 개인, 제출기한은 매년 4월30일
 - 서식 B : 사업을 하는 개인, 제출기한은 매년 6월30일
 - 서식 M : 사업을 하지 않는 비거주자, 제출기한은 매년 4월30일
 - 서식 M :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 제출기한은 매년 6월30일
 - 서식 P : 공동기업, 매년 6월30일
- ※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라. 세금환급

환급은 납세자에게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귀하의 납세자파일이 보관된 지사로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소비자서비스센터로 메일 (callcentre@hasil.gov.my)이나 전화(1-300-88-3010)를 하면 됩니다.

마. 비거주자

1년간 말레이시아에 머무르는 기간이 182일보다 적을 때 시민권과 국적에 관계 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과세범위

- 비거주자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세율

| 소득유형 | 세율(%) |
|---|-------|
| 사업, 무역이나 직업 고용 배당금 대여 | 26% |
| 대중 예능인 이자 | 15% |
| 동산 또는 권리의 이용, 기술자문·기술지원 또는 기술서비스, 설비·기계 등의 공급시 설치서비스, 무형자산 이용 등 관련 개인 및 법인의 서비스로 얻은 소득, 로열티 | 10% |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말레이시아에서 고용 된지 60일미만
- 말레이시아 선박에 고용되어 승선하는 경우
- 말레이시아 고용인이 55세가 되어 받은 연금

- 은행 이자
- 세금이 면제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바. 세금 면제

통과하여 출국시

- RM 3,000이하로 일년에 세 번을 초과하지 않고 통과하여 말레이시아를 떠날 때

의료 및 치과 혜택

- 2008년부터는 전통치료 및 산부인과 비용은 제한없이 공제됩니다.

퇴직수당

※ 다음과 같을 때 퇴직소득은 면제된다.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건강이 악화되어 퇴직했을 때
- 55세 이후나 퇴직연령에 퇴직을 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단체 내에서 근로자로 같은 회사내에서 10년근무를 했을때
- 고용주와의 계약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연령에 이르렀거나 50살 때 55살 이전에 한 퇴직으로, 근로자가 같은 회사그룹 내에서 같은 고용주나 회사와 10년간 지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했을때

공공펀드로 납부한 퇴직금

- 모든 성문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관련 공공펀드로 납부한 퇴직금

계약 공무원의 퇴직금

- 계약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공무원에 대해 공공

펀드로 납부한 퇴직금

해고에 대한 보상금

해고일 전후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보상금을 건강약화로 지급받을 때
- 보상금을 다른 사례로 지급받을 때
- * 2008년 7월 1일 이전이 종료일 -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고용주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가 모두 완료된 연도기간 RM6,000 면제
- *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일 -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고용주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가 모두 완료된 연도기간 RM10,000 면제
- ※ 지배회사 임원(근무하지 않는 임원)이 받는 보상금은 전부 과세됩니다

연금(생활보조금)

- ※ 개인이 받는 연금은 다음의 조건일 때 면제 됩니다
- 55세나 법에 따른 강제적인 퇴직연령에 퇴직할 때
- 만일 건강약화로 퇴직하고, 정부나 승인된 연금제도에 의해 받는 연금

사망 위로금

- 사망 위로금은 소득세에서 전부 면제

장학금

-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 돈은 고용여부 관계없이 소득세 면제

장관이 승인한 문화공연 출연에 대한 말레이시아 개인거주자의 소득

- 이 범주 안에 받은 돈은 장관이 승인한 조건 안에서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자

- ※ 2008년 8월 30일부터 다음의 기관에 예치된 돈 중 말레이시아 개인거주자가 예치한 돈의 이자 소득은 세금이 면제 됩니다
- 은행금융기관법 1989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면허받은 은행이나 금융회사
- 이슬람 은행법 1983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
- 발달 재정기관법 2002에 의하여 규정된 발달재정기관
- Tabung Haji 법 1995에 의하여 설립된 Lembaga Tabung Haji
 - * Lembaga Tabung Haji : 말레이시아 총리실 직속의 기금운영기관
- 회사법 1965에 의하여 설립된 말레이시아 건설협회
- 회사법 1965에 의하여 설립된 보르네오 주택 담보 용자 기구(B.H.M.F.B)

배당금

- ※ 아래 배당금은 세금이 면제된다
- 회사 계정의 배당금
- 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Amanah Saham Bumiputra과 같은 재정장관이 승인한 뮤추얼펀드가 지급하는 배당금
- 국공채 투자가 90%혹은 그이상인 재정장관이 승인한 뮤추얼펀드가 지급하는 배당금

로열티

- 저작권이나 특허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을 때 다음의 면제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 로열티 형식 | 면제(RM) |
|----------------------------|--------|
| 1. 예술작품/ 레코딩 디스크/ 테이프 발행 | 10,000 |
| 2. 문학작품 책의 번역물 | 12,000 |
| 3. 문학작품/ 원판 그림/ 뮤지컬 작품의 발행 | 20,000 |

- ※ 하지만 개인적 공무활동에 대한 보수의 일부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외에서 송금된 소득

- 2004년 과세기간부터 말레이시아 밖에서 발생한 소득을 거주자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받았을 때 세금은 면제된다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사례비

- 2004년 과세기간부터 프렌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의 확인, 조정, 승인 목적으로 공급한 서비스로 개인에 의해 수수료나 사례비를 받을 때 고등교육 기관은 면제된다.
- 말레이시아 자격 단체(MQA)로부터 인증받은 인정받은 개인이 공급한 서비스로 만일 개인적 공무활동에 대한 보수의 일부일 경우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결과에 대한 소득

- 2004년 과세기간부터 과학 연구결과를 상업화하여 개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지급받는 날부터 과세기간 5년동안 법에서 정한 소득의 50%세액감면이 됩니다.
- 지급받는 개인과학자들은 반드시 시민이고, 말레이시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상업화된 연구결과물은 과학기술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 개인거주자의 소득공제

과세기간 2012년

| 번호 | 공제 유형 | 금액(RM) |
|----|---|------------|
| 1 | 거주자 본인 및 부양가족 | 9,000 |
| 2 | 부모를 위한 의료비 | 5,000(한도) |
| 3 | 기초적인 보조기구 | 5,000(한도) |
| 4 | 장애인 | 6,000 |
| 5 | 개인의 교육비 | 5,000(한도) |
| 6 | 중대한 질병의 의료비 | 5,000(한도) |
| 7 | 정밀종합검진 | 500(한도) |
| 8 | 책, 저널, 잡지, 출판물 구입 | 1,000(한도) |
| 9 | 개인 컴퓨터 구입 | 3,000(한도) |
| 10 | 국립교육저축제도(SSPN)의 순수저축액 | 3,000(한도) |
| 11 | <p>거주시설 구입을 위해 소진한 이자. 이자를 납부한 첫해부터 연속적으로 3년동안 RM10,000를 납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른다.</p> <p>I) 납세자는 말레이시아 시민이고, 거주자</p> <p>II) 주거용 부동산 한 채에 한하며</p> <p>III) 판매와 구입계약이 2009.3.10. ~ 2010.12.31. 사이에 체결되어야하고,</p> <p>IV) 거주시설은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아야 한다</p> <p>(A) 둘 혹은 그이상의 개인이 같은 재산에 대해 공제할수 있다</p> <p>(B) 매년 개인이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총이자.</p> <p>다음 공식에 따라 각 연도동안 공제금액이 공제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관련연도에 공제되는 총이자} \times \frac{\text{관련연도에 관련개인이 소비한 총이자}}{\text{개인이 소비한 총이자}}$ </div> | 10,000(한도) |

| 번호 | 공제 유형 | 금액(RM) |
|----|--|-----------|
| 12 | 스포츠 활동장비 구입 | 300(한도) |
| 13 | 개인명의로 등록된 고속데이터 통신망 사용료 | 500(한도) |
| 14 | 배우자 / 이혼수당 지급액 | 3,000 |
| 15 | 장애인 배우자 | 3,500 |
| 16 | 보통의 자녀공제 | 1,000 |
| 17 | 18세이하의 미혼인 자녀가 받는 종일수업 (18세 치루는 상급시험(A-Level), 인증시험이나 입학허가시험을 준비를 위한 코스) | 1,000 |
| 18 | 18세이하의 다음과 같은 자녀로 I) 졸업증 수여 혹은 그이상(입학관련 코스를 제외)을 위해 받는 고등 교육 II) 학위수여나 그와 동급(석사 또는 박사학위포함)에 대한 말레이시아 밖에서 받는 고등교육 III) 관련 정부당국의 교육인가 승인을 받은 기관 | 4,000 |
| 19 | 장애가 있는 자녀 18세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RM4,000이 추가면제된다. 미혼이고, 졸업예정이거나 말레이시아 학사학위 이상이거나 말레이시아 밖에 있는 정부에서 공인받은 고등교육기관의 프로그램 | 5,000 |
| 20 | EPF 생명보험료 * EPF : 근로자공제기금 | 6,000(한도) |
| 21 | 2010년1월1일부터 납부를 시작한 새연금제도의 보험료나 기존연금제도에 지불한 추가보험료(RM1,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명보험료와 같이 요구할수 있다.) | 1,000(한도) |
| 22 | 교육이나 의료혜택이 있는 보험료 | 3,000(한도) |

아. 소득세율

과세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 과세대상 소득 | 계산 | 세율 | TAX(RM) |
|------------------|------------------------|----|-----------------|
| 0 - 2,500 | 처음 2,500 | 0 | 0 |
| 2501 - 5,000 | 다음 2,500 | 1 | 25 |
| 5001 - 10,000 | 처음 5,000 다음 5,000 | 3 | 25 150 |
| 10,001 - 20,000 | 처음 10,000 다음 10,000 | 3 | 175 300 |
| 20,001 - 35,000 | 처음 20,000 다음 15,000 | 7 | 475 1,050 |
| 35,001 - 50,000 | 처음 35,000 다음 15,000 | 12 | 1,525 1,800 |
| 50,001 - 70,000 | 처음 50,000 다음 20,000 | 19 | 3,325 3,800 |
| 70,001 - 100,000 | 처음 70,000 다음 30,000 | 24 | 7,125 7,200 |
| 100,000 초과 | 처음 100,000 다음 RM | 26 | 14,325 ----- |

과세기간 2009년

| 과세대상 소득 | 계산 | 세율 | TAX(RM) |
|-------------------|--------------------------|----|------------------|
| 0 - 2,500 | 처음 2,500 | 0 | 0 |
| 2501 - 5,000 | 다음 2,500 | 1 | 25 |
| 5001 - 10,000 | 처음 5,000 다음 5,000 | 3 | 25 150 |
| 10,001 - 20,000 | 처음 10,000 다음 10,000 | 3 | 175 300 |
| 20,001 - 35,000 | 처음 20,000 다음 15,000 | 7 | 475 1,050 |
| 35,001 - 50,000 | 처음 35,000 다음 15,000 | 12 | 1,525 1,800 |
| 50,001 - 70,000 | 처음 50,000 다음 20,000 | 19 | 3,325 3,800 |
| 70,001 - 100,000 | 처음 70,000 다음 30,000 | 24 | 7,125 7,200 |
| 100,001 - 150,000 | 처음 100,000 다음 50,000 | 27 | 14,325 13,500 |
| 150,001 - 250,000 | 처음 150,000 다음 100,000 | 27 | 27,825 27,000 |
| 250,000 초과 | 처음 250,000 다음 RM | 27 | 54,825 ----- |

가. 개요

원천세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비거주자 개인, 법인이다.

| 지급 방식 | 소득세법1967 | 원천세율 | 납부서식 |
|---|----------------------------|-------------------|---------|
| 계약 지급 | 107A(1)(a)항 107A(1)(b)항 | 10% 3% | CP37A |
| 이자소득 | 109항 | 15% | CP37 |
| 로얄티 | 109항 | 10% | CP37 |
| 동산 또는 권리의 이용, 기술자문·기술지원 또는 기술서비스, 설비·기계 등의 공급시 설치서비스, 무형 자산 이용 등 관련 개인 및 법인의 서비스로 얻은 소득 | 109B항 | 10% | CP37D |
|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면제되지 않은 이자소득 | 109C항 | 5% | CP37C |
| 대중예능인 비거주자 소득 | 109A항 | 15% | |
| 부동산투자신탁(REIT) (i) 거주자 회사를 제외하고 (ii) 비거주자 회사 (iii) 외국투자기구 2007년 1월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109D항 | 10% 25% 10% | CP37E |
| 가족펀드/ (i) 개인과 그 외 (ii) 비거주자 회사 | 109E항 | 8% 25% | CP37(T) |
| ITA1967 4(f)에 근거한 소득 | 109F항 | 10% | CP37F |

모든 원천세 납부(비거주자 대중예능인이 아닌) 비거주자 수취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비거주자 수취인에게 입금이나 납부한 날짜가 증명되는 납부서류를 함께 적절하게 완성한 관련 납부서로 해야 한다.

납부자 및 수취인의 말레이시안 세금 일련번호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국적까지

서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일 납부자가 수취인의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납부자는 다음 주소로 일련번호를 요청해야한다.

- Director Non Resident Branch Customer Services Unit 11th Floor, Block 11 Government Office Complex Jalan Duta, 50600 Kuala Lumpur

- 납부자의 주소, 이름전체와 납부성격

긴급한 납부는(수취인의 세금일련번호를 모를 경우) 납부자는 납부서식 CP37A / CP37/ CP37D, 세금계산서 사본, 송금전표(전자 송금)함께 바로 다음으로 보내야 한다.

- Director Non Resident Branch Withholding Tax Unit 7th Floor, Block 8 Government Office Complex

나. 법 준수를 위한 집행(비거주자 대중연예인과 거주자 개인이 아닌경우)

다음의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납부자가 규정된 세율을 납부하지못할 때(공제했든 안했든)
- 납부자가 원천세를 늦게 납부할 때(비거주자에게 납부하거나 공제한 날짜이 후 한달 안에 못할 때)

4 MTD(Schedule of Monthly Tax Deductions : 근로자 원천징수)

가. 고용주 의무인 MTD준수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MTD규칙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컴퓨터 계산방법이나 매월 세금공제 계획에 따라 매월 혹은 해당하는 달 직 원급여에서 MTD를 공제하고, 단체장에게 지급합니다.
- MTD 규칙 4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의 급여는 추가공제 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단체장에게 매월 10일전에 전월의 급여에서 공제했거나 공제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MTD 납부와 추가공제를 제출 할 때는 수익에 대한 고용인의 다음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일련번호(만약 있을 경우)
 - 신분증이나 여권 이름
 - 새로운, 낡은 신분증 번호/ 경찰번호/군대번호나 여권번호(외국인 근로자)
 - MTA 추가공제금액

만일 고용주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MTD 납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달의 10일 이후에 납부가 된다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MTD 13에 의해 요구되는 규정서식을 고용인의 급여지급 정지시 제출해야 합니다.
- MTD 규칙에 따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연도가 끝나는 7년 동안 서류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올해 이전 고용주에게 고용관련정보를 규정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직원이 관련달의 공제나 환급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원한다면 규정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공제와 환급은 고용주의 승인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 만일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MTD의 일부가 주택시설가격(VOLA)과 혜택(BIK)을 포함하는 경우 규정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에 따른 과세연도가 종료일부터 7년동안 공제신청과 관련된 각각 혹은 모든 영수증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고용주에게 개인적으로 변경된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완벽,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 과세대상 관련하여 규정된 서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직원이 하지 못하면, 113(1)(B)조에 의하여 범칙행위가 됩니다.
- 75A조에 의하여 관리대상 회사 사장은 MTD 규칙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MTD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 MTD 작성방법(부록2 MTD세액표 참고)

근로자 원천징수표는 IRBM(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가 급여프로그램을 특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고용주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직원 분류

- 근로자 원천징수표와 컴퓨터 계산방법은 3가지로 분류 됩니다
 - 분류 1(Category 1) : 미혼인 경우
 - 분류 2(Category 2) : 기혼이고, 배우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
 - 분류 3(Category 3) : 기혼이고, 배우자가 직장이 있는 경우
- 근로자 원천징수표나 컴퓨터계산방법 3가지는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미망인이 되거나, 혼자(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부인의 경우 MTD는 분류 3(KA1-KA20)까지 확인된 금액이나 남편은 분류 3의 K로 확인된 금액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확인한 자녀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분류 3(KA1-KA20)의 MTD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5명이 있는 직장인 남편과 직장인 부인이 있을 경우 남편은 3명의 자녀공제를 신청하고, 부인은 남은 2명의 자녀를 신청한다면 MTD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남편 - 분류 3(KA3)

- 부인 - 분류 3(KA2)

MTD는 입양을 했으나 미혼인 경우 분류 3(KA1-KA2)에 따른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MTD를 결정하기 전에 고용주는 직원에 관련한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총 매월 급여
- 혼인여부
- 자녀의 수

MTD세액표를 사용한 MTD 계산방법

- MTD세액표를 이용한 PCB로 계산하는 고용주의 경우 만일 실제 공제액이 RM500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RM500을 한도로 합니다.
- 예 1 : 근로자가 급여를 매월 RM10,000를 받을 때, EPF공제가 RM1,100일 때
- MTD의 결정은
 - 매월 급여 : RM10,000
 - EPF 허용공제액 : RM500
 - MTD에 따른 순수 급여액 : RM9,500
- 예 2 : 근로자가 매월 RM4,000 받을 때, EPF 공제는 RM 440, 근로자가 받는 순수급여는 RM3,560 이다

- 예3 : 근로자가 결혼했고, 부인은 일하지 않는다. 아이도 없다. 총 급여는 RM25,000이다(EPF 공제 : RM2,750). 그래서 그가 받는 순수 급여는 RM 24,500이다.

5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 부동산 양도세 개요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보통 토지와 건물)처분이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 부동산 양도세 부과목적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어 부동산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안에 적합하게 부동산 양도세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을 결정합니다. 정부에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양도세를 낮추곤 합니다(사실 2007년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사이 부동산 거래의 경우 투자촉진을 위해 면제되었습니다.)

다.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개인과 회사

라. 부동산 양도세 계산방법

순자본에 대해 부과되는데 순자본은 총자본금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영수증)을 빼는 것이 허용됩니다.

- 법적 비용

- 부동산을 파는데 발생한 부동산 비용(판매수수료, 보통 판매가격의 2%-3%)
- 관리비용
- 부동산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발생한 비용. 수리나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같은 부동산 개선작업

허가된 공제한도는 RM10,000와 자본수익의 10%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보통, 부동산양도세율을 결정하는 날짜는 언제 구입하고, 언제 처분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구입하기로 한때 즉 판매, 구입 약정날짜는 구입날짜로 결정 됩니다.

마. 부동산 양도세 세율

| 처분시기 ¹³ | 95년10월 ~ 07년3월 | 07년4월 ~ 09년12월 | 10년1월 ~ 11년12월 | 2012년 |
|--------------------|-------------------|-------------------|-------------------|-------|
| 1년내 처분 | 30% | 0% | 5% | 10% |
| 2년내 처분 | 30% | 0% | 5% | 10% |
| 3년내 처분 | 20% | 0% | 5% | 5% |
| 4년내 처분 | 15% | 0% | 5% | 5% |
| 5년내 처분 | 5% | 0% | 5% | 5% |
| 6년이후 | 0% | 0% | 0% | 0% |

바. 부동산 양도세 납부기한

RPGT의 성격을 부여한다면,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 납부하는 것이며, 세금 결정을 위한 납부기한은 60일입니다.

사. 면제규정

말레이시아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이 생애 한번 주거용 부동산 한 채를 처분한 경우 차익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조부모와 손자, 손녀 간에 부동산 거래의 경우 차익에 대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6 | 판매세

가. 개요

판매세는 단일세로 현지제조물품및 상품 수입시에 부과됩니다. 라부안, 랑카위, 티오만과 자유구역은 판매세 범위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판매세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부과, 징수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소비세입니다.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세관이 수입상품을 확인시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판매세는 이후 재화와 용역을 하나로 넓게 포괄하는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나. 제품의 평가

판매세 제품가격은 세계무역기구(WTO)원칙에 따른 관세평가에 따릅니다.

다. 세율

판매세는 증가(ad valorem)세입니다. 판매세 특정세율은 현재 석유계층(보통 석유로 정의한다)에만 부과된다.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종류 | 세율 (%) |
|-------------------------------------|--------|
| 과일, 식량, 목재및 건축자재 | 5 |
| 담배및 시가 | 5 |
| 술과 알콜음료 | 5 |
| 특정세율 석유및 특별히 면제되지않는 제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제품 | 10 |

라. 과세대상 제품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제품은 재정부 명령에 따라 면제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수출
- 면제되는 제품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살아있는 동물, 생선, 해산물과 육류, 우유, 계란, 야채, 과일, 빵등 필수식량
 - 스포츠 장비 및 책 등을 포함한 의료 및 교육장비
 - 사진장비 및 필름
 - 부품과 용품을 포함한 201c.c이하의 오토바이와 성인용 자전거
 - 직물업, 취사산업, 종이 인쇄산업, 건설산업, 금속산업등을 위한 기계 장치
 - 코코아, 고무와 그와 관계된 생산품을 포함한 주요상품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광물질, 화학물질 등
 - 헬리콥터, 항공기, 함선 그리고 다른 선박들

마. 면허

면허된 생산업자로서 적절하게 면허받지 않은 사람은 과세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석유이외의 제품관련하여 “생산”이라는 용어는 수작업이나 기계수단으로 자연적 물질이나 화학적 물질을 크기, 모양이나 특성을 변화시켜 새로운 생산물(기계장치나 다른생산품의 일부분이 되는 조립포함)로 변환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건설에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설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석유와 관련한 “생산”이라는 의미는 정제하거나 합성하는것을 말하며 이물질의 첨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 면허의 면제요건

직전연도 RM 100,000을 초과하지않는 총판매가격의 과세대상 제품 생산자는 다음 12개월동안 RM 100,000이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면허가 면제됩니다. 자격은 연단위로 갱신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산업자는 투입된 제품의 면세를 위해서는 면허 쪽을 택해야합니다.

또한 특정 생산시설은 면허자격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생산시설에는 개발 및 사진현상, 슬라이드필름생산, 미리 혼합한 콘크리트 제작, 대용량제품의 재포장, 중고품 수리 및 자동차 에어컨설치가 포함됩니다.

사. 환급

면허있는 생산업자나 수입자는 이후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납부한 판매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 납부와 과세기간

보통 판매세는 과세대상 사람이 과세대상 제품이 팔리거나 처분하는 시기가 기한입니다. 모든 판매세는 과세기간은 2달이며, 과세기간 만료일부터 28일이내에 세

관총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석유류의 공급시기는 특별조항에 따릅니다.

자. 회수불능 대금이나 대손에 대한 판매세 환급

면허자는 요건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간주되거나 대손처리한 채무관련 서비스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일부터 6개월 후에 징수할 수 없는 부채도 포함합니다.

7

서비스세

가. 개요

서비스세는 모든 과세대상 개인이 공급하는 모든 과세대상 서비스에 부과징수하는 소비세입니다. 서비스세는 이후 재화와 용역을 하나로 넓게 포괄하는 재화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나. 세율

서비스세율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종가(ad valorem)의 6%입니다. (이전에는 5%). 이 세금은 모든 과세대상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 주 사용카드로 연간 RM50, 그리고
- 추가사용카드로 연간 RM25

서비스세는 카드 발급일과 그날부터 1년경과후 또는 갱신일에 징수됩니다.

다. 과세대상 개인과 면허

과세대상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과세대상 사람은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사람이란 용어는 개인, 회사, 사회, 협회, 회사 그리고 다른 모든 법률상의

모든 사람이다. 면허발급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라. 과세대상 목록

| | 대상 | 연간판매량 (RM) |
|----|---|--------------------------------|
| 1 | 25개 이상의 객실을 가진 호텔 사업을 하는 사람·회사(일부 제외) | * |
| 2 | 25개 초과하는 객실을 가진 호텔에 위치한 레스토랑, 바, 스넥바, 커피하우스 내에서 식사를 하고 일부만 테이크아웃하며 음식, 음료, 및 담배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 |
| 3 | 25개 이하 객실을 가진 호텔에 위치한 레스토랑, 바, 스넥바, 커피하우스 내에서 식사를 하고 일부만 테이크아웃하며 음식, 음료, 및 담배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300,000 |
| 4 | 호텔밖에 위치한 레스토랑, 바, 스넥바, 커피하우스 내에서 식사를 하고 일부만 테이크아웃하며 음식, 음료, 및 담배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일부 제외) | 3,000,000 (08년7월1일부터 효력) |
| 5 | 음식코너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
| 6 | 나이트클럽, 댄스홀, 카바레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 |
| 7 | 허가받은 진료소와 안마시술소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 |
| 8 | 1등급, 2등급이나 3등급 술집과 1등급이나 2등급 호프집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 |
| 9 | 개인클럽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300,000 |
| 10 | 골프코스나 골프연습장 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연판매매출 RM 300,000 이하나 25개 이하 객실을 가진 호텔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포함) | * |
| 11 | 허가받은 사립병원 | 300,000 |
| 12 | 보험회사 | * |
| 13 | 통신및 멀티미디어법 1998이나 통신및 멀티미디어(허가받은) 규정 2000에 따라 등록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 | * |
| 14 | 관세법 1967의 90조에 근거한 모든 물품 또는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운송거래를 법적으로 허가받은 모든 사람 | * |

| | 대상 | 연간판매량 (RM) |
|----|--|---------------|
| 15 | 관세법 1967의 65조나 65E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람으로써 상품이나 짐의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로 법에 따라 허가받아 보세창고나 국내통관거점에 저장하는 모든사람 | * |
| 16 | 자동차 주차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150,000 |
| 17 | 택배서비스회사 | 150,000 |
| 18 | 수리점센터가 있거나 없는 자동차 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람, 회사 | 150,000 |
| 19 | 허가받은 민간기관 | 150,000 |
| 20 | 직업소개소 | 150,000 |
| 21 | 렌터카및 렌터카서비스 회사 | 300,000 |
| 22 | 광고회사 | 300,000 |
| 23 | 공인회계사 | ** |
| 24 | 변호사 | ** |
| 25 | 전문적인 기사 | ** |
| 26 | 건축가 | ** |
| 27 | 허가받거나 등록된 측량사/등록된 감정사및 부동산 중개사 | ** |
| 28 | 컨설턴트(일부 제외) | ** |
| 29 | 관리회사 | ** |
| 30 | Negara Malaysia BANK가 규제하는 신용카드나 충전카드 보험업을 통해 신용카드 및 충전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 | * |

* 제한없음

** 2008년1월1일부터 제한없음

8 | 인지세

가. 과세대상

인지세는 금액이 언급된 서류와 일정한 문서에 대하여 종가세로 부과되며, 특별한 문서에 대하여는 특별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나. 세율

| 관련증서 | 과세대상 | 세율 |
|--|---|--|
| 부동산양도증서 재산양도증서 - 주식, 시장성유가증권, 수취 어음 또는 장부상의 부채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M1,000까지 • RM1,000부터 RM4,000까지 • RM4,000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 2% • 3% |
| 서민주택매매증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12.31까지 처분하거나 취득하 는 계약서(다만 처음 구입자에 한함) | 최대 RM100 |
| 지분증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 |
| 지분, 주식, 시장성유가증권 등 의 매매계약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M1,000 단위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M1.00 |
| 부과금 지급부담 또는 지급된 증서의 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의 조세의무가 RM10 이하 • 위 이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과 같음 • RM10.00 |
| 차용증서, 저당증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증계약서(RM1,000) • RM250,000까지 차용할 기본증서는 매 RM1,000마다 • RM250,000초과 차용증서는 매 RM 1,000 마다 • 추가담보보증계약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M5.00 • RM1.00 • RM5.00 • 기본납부액의1/5 (최대 RM10.00) |
| 대부계약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ABBASL)하의 물품구매를 위한 대부증서 • 관련법(ASL)하의 리스구매계약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M3.00 or RM10.00 • 차용증서, 저당증서 와 동일 |

다. 면세

- 회사합병 및 재건 증서
- 특수관계기업간 재산양도증서
- 서민주택정책에 따른 1채의 서민주택 구입자금의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관련 모든 증서(2002.7.1부터)
- RM5,000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증권
- 회사채와 관련된 증서

9

연예세

가. 과세대상

연예장소의 입장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는 연예장소 내의 연예시설이용에도 부과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나. 세율

입장요금 및 연예시설 이용대금의 25%로 표준화 되었습니다.

다. 면세

- 지방극장그룹에 의하여 조직된 연극용 입장권
- 국립체육장, 국립극장, 국립미술관, 페트로나스교향악홀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등의 입장권

10 | 국내소비세

가. 과세대상

국내소비세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및 수입물품 중 일부 선정품목 즉 담배, 주류, 트럼프용 카드, 마작용 타일과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나. 세율

| 과세대상 | 과세기준 | 세율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 밴 · 4W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 100% · 30% ~ 90% · 50% ~ 90% |
| 이륜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 50% |
| 주 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도수 5.8%이하 · 이외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리터당 RM47.50 · 10리터당 RM48.80 |
| 담 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g당 RM58.00(2004년까지) · Kg당 RM81.00(2005년부터) |
| 트럼프용 카드 및 마작용 타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

다. 면제

국내 제조품의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의 지위를 부여받은 제조업체가 국내소비세 과세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따른 허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가. 과세대상

도로세는 RTO(Road Transport Ordinance)에 따라 승객운송용 차량, 택시나 전세용 차량, 학교버스나 무대버스 등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나. 세율

당해 차량의 종류(엔진규모, 승차인원규모 등)와 사용연료(휘발유, 디젤)에 따라 다양한 세율(종가, 종량, 기간단위 등)로 부과됩니다.

다. 감면

- 새로운 세대의 디젤엔진에 맞춘 자동차는 현행세율의 50%
- 천연가스사용 엔진용 차량은 휘발유차량 세율의 50%
- 휘발유와 천연가스를 전환 사용하는 이중엔진차량은 현행세율의 25%
- 디젤과 천연가스를 전환 사용하는 이중엔진차량은 현행세율의 25%
- 골동품자동차는 현행세율의 10%
- 사회복지청(SWD)에 등록된 장애인전자가 소유한 자동차와 국내제작 차량, 밴 등에 대하여는 도로세를 면제

12 | 수입관세

말레이시아의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종가세(ad valorem)이나 일정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광범위한 종류의 원자재, 컴포넌트 및 기계류에 대해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CEPT)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CEPT제도에 따르면 ASEAN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2005년까지 0~5%로 인하됩니다.

13 | 기타 각종세금

천연고무수출물품세, 주석수출물품세, 천연팜오일수출물품세, 화물차부과세, 외국인노동자부과세, 횡재부과세 등이 있습니다.

제 4 장 투자 장려정책⁴⁾

1.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2.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3.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4. 환경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5.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6.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7. 정보통신 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8.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4)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홈페이지(<http://www.mida.gov.my>)내 말레이시아 제조부분에의 투자안내에서 발췌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계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 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 부문, 그리고 연구개발(R&D), 교육훈련 및 환경관리활동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상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 소비세의 면제 형태로 제공됩니다.

1 |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가.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부문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 자격(Pioneer Status)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 혜택입니다.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와 같은 특정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를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이라 칭합니다.

1) 개척 자격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 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정 소득액⁵⁾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5) 법정소득액은 총 소득액에서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과 법정상각(capital allowances)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척 자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 소득액은 총 소득에서 수익적 지출액(revenue expenditure)과 자본공제액(capital allowances)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2) 투자세 공제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대상기업은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 기업이란 권장활동에 종사하거나 신기술 분야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정의 됩니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자본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이테크 기업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말레이시아 국내에서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최소 1%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운영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② 관련 학위소유, 최소 5년 경력의 과학 및 기술직원 비율이 회사 총 직원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제품과 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되는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자격 유지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자본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2009 과세연도부터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의 중소기업은 과세소득 중 500,000 링깃까지 인화된 법인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25%로 유지합니다.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세액을 20% 감면해 줍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50만 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의 투자 지분이 60%이상인 소규모 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단독소유권이나 파트너십이 이 감면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시설/활동을 인수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2012년 3월 2일부터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소규모 기업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부가가치 창출이 25% 이상, 또는
- ② 경영, 기술 및 감독(MTS) 비율이 20% 이상일 것.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영위하는 활동은 소규모기업에 권장되는 제품과 활동 목록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정된 기계와 설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선정된 기계와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자동차산업의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과 컴포넌트로 선정된 부품과 컴포넌트를 제조하는 회사는 다음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10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최초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가능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 핵심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과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속 시스템
- 브레이크 시스템
- 에어백 시스템
- 조향장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적격 핵심 고부가가치 부품과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모터
- 전기 배터리
- 배터리 관리시스템
- 인버터
- 전기 에어컨
- 공기 압축기

이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조립 또는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조립하거나 제조하는 회사는 다음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10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최초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공제 가능 자

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는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소진될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국내 조립/제조 차량에 대한 국내소비세 50% 면제 또는 산업조정기금 (Industrial Adjustment Fund, IAF) 지원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팜 오일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강화 인센티브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파티클보드(PB, 건축용 합판), 중밀도 건축용 섬유판(MDF), 합판, 펄프 및 종이와 같은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 회사

-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② 기존 회사의 재투자

-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조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 재투자액 공제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RA)는 제조업 및 선정된 농업 활동을 영위하며 기존 사업의 확대,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종 산업 내의 관련제품으로의 다변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존회사에 주어집니다. 단 이 공제는 2009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3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회사에 한정합니다.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 생산수준을 초과 달성하는 회사는 재투자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액 공제(RA)는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 즉 건물 준공 또는 설비/기계 가동개시 후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과세연도부터 동일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회사는 당해 관계회사가 이미 그 자산에 대해 재투자액 공제(RA)를 신청한 경우 동 자산에 대해 재투자액 공제(R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9 과세연도부터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재투자 시점으로부터 5년내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을 취소하고 재투자액 공제(RA) 자격을 얻기 위해 개척 자격 또는 개척기업 증서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액 공제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투자액 공제자격을 얻기 위한 개척 자격 또는 개척기업 증서 반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속 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기간 15년이 경과한 후에 권장제품 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ACA)는 40%의 초기 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아 3년 내에 총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제품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SME)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9 및 2010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 및 기계로 발생한 지출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ACA). 이 공제는 자산을 완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내의 과세연도에 청구해야 한다. 이 인센티브는 2009 및 2010 과세연도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 2009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SME)은 소액 자산에 대한 자본공제 상한 1 만 링깃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속 자본공제(ACA)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 Inland Revenue Board)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2년간의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가속 자본공제를 통해 회사는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80%의 공제를 받아 2년 내에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 장비에 한해 가속 자본공제(AC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안통제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가속 자본공제(ACA)는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ICA,)에 의거 인가 받은 회사의 공장 부지 내에 설치된 보안통제장비에 대해 부여되며, 이 공제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009과세연도부터 이 공제의 대상은 모든 사업체의 부지 내로 확대됩니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안통제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경보장치
- 적외선 동작감지장치
- 사이렌
- 출입통제장치
- 폐쇄회로 TV
- 영상감시장치
- 보안 카메라
- 무선 카메라 송신기
- 저속촬영녹화 및 비디오 동작감지 장비

2009 과세연도부터 2012과세연도까지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된 신청서는 이 공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5) 공업화 건축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

공업화 건축시스템(IBS)은 건축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을 만들며, 외국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공업화 건축시스템(IBS) 부품제작을 위한 생산용 주형(moulds)을 구입하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3년간의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수출 증진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되는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되는 제품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자동차 정책(National Automotive Policy; NAP)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되는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수출되는 제품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10과세연도부터 2014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 제품의 수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제조업체는 다음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한 수출신장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시장 진출에 성공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업종에서 최고의 수출증가액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그룹 공제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설립된 모든 거주자 기업들에 대해 그룹 공제(Group Relief)를 부여합니다. 2009 과세연도부터 그룹 공제는 당해 연도의 결손금액 중 미사용분의 50%까지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승인된 식품 생산, 산림 플랜테이션,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광학 및 광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회사를 포함한다)의 수입에 대해 상계할 수 있던 것을 70%로 확대시행합니다. 그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회사와 양도회사는 각각 보통주 해당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을 초과해야 합니다

- ② 청구회사와 양도회사의 회계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 ③ 기업집단 내 청구회사와 양도회사의 직간접 보유지분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당해 70%의 지분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2년간 계속하여 보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⑤ 독점권 또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매입으로 인한 결손금은 그룹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⑥ 현재 아래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기업은 그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척 자격
 - 투자세 공제/투자 공제
 - 재투자 공제
 - 해운업 이익금(Shipping Profits)의 면제
 -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Section 127)에 따른 소득세 면제
 - 인센티브 투자 회사

이와같이 인센티브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승인된 식품 생산, 산림 플랜테이션,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광학 및 광통신 사업에 대한 그룹 공제는 중단됩니다.

단, 앞에 서술한 사업에 대한 그룹 공제 인센티브를 받은 회사는 계속해서 자회사가 발생시킨 결손금에 대해 그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1986년 투자진흥법에 따라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회사”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협회(cooperative societies and associations)
- 농업에 종사하는 단독소유권 및 파트너십

농업부문의 권장제품 또는 권장활동을 생산 또는 영위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

1) 개척 자격

제조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농업부문 기업은 개척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농산물을 처음으로 판매한 날로 정합니다)로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세 공제(ITA)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대상기업은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투자세 공제 대상기업은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 프로젝트가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식재 농작물 경작 축산
-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농업 프로젝트 개시 시점과 농작물 가공 시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종합 농업 프로젝트는 가공 또는 제조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추가로 5년간 투자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품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농장 수준과 식품 생산/가공 수준 모두에서 식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인센티브들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식품 가공 부문의 원자재 공급이 늘게 되어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것입니다.

세제 인센티브는 승인된 식품 생산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제공되는 세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액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 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②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당해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인 경우 10과세연도 동안, 확대 프로젝트인 경우 5과세연도 동안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기간은 법정 소득을 낸 첫 해로부터 개시합니다.
 - 세금 면제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의 면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면제 기간 동안 발생한 결손금 역시 10년간의 면제 기간이 끝난후에도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해 회사는 식품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자회사 지분출자율이 70%이상
-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이 승인한 식품 생산활동은 케나프(kenaf), 채소, 과일, 허브와 향신료식물 재배; 수산양식업; 소, 염소 및 양의 사육; 및 원양어업
- 식품 생산 프로젝트는 인센티브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존회사가 상기식품의 생산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5년 간 상기의 신규투자자와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생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신규 회사와 기존회사 모두 이 인센티브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식품의 생산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농업 & 농업기반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ibasedIndustry)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할랄 (Halal)’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용 ‘할랄’ 식품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최신 현대 기계장비 사용을 늘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할랄’ 식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개발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이 발급하는 ‘할랄’ 인증 및 기타 품질 인증을 받고 ‘할랄’ 식품생산에 투자하는 회사는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할랄 인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www.halal.gov.my를 참조)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할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산업단지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산업단지의 매력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산업단지 운영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할랄산업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정 할랄산업단지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수출판매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면제

대상 활동은 다음 네 가지 산업부문 중 하나여야 합니다.

- 특화된 가공식품
- 의약품, 화장품 및 개인용 위생제품
- 축산 및 육류 제품
- 할랄 재료

할랄물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할랄산업과 공급사슬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의 5년간 100% 면제. 개척 기간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할랄 물류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물류서비스여야 합니다.

- 물류 대행
- 보관 및 창고
- 운송

신청서는 할랄산업 개발공사(HD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할랄 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표준 인증 취득비용의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 기업의 할랄 식품을 비롯한 할랄 제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가 다음의 인증 취득을 위해 발생한 지출 소득세 산정 시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의 할랄 인증 및 품질시스템과 표준 인증
- 국제 품질시스템 및 표준 인증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재투자액 공제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축산물, 수산물 등 필수 식품 생산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을 36개월 이상 영위한 개인이나 회사는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R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투자액 공제는 회사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재배
- 수산양식용 종묘
- 축산업 종축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원기반 산업에 대한 재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 사업을 영위하며 수출잠재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재투자할 경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품 가공활동에 대한 재투자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국민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기업이 권장 식품 가공활동에 재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간 70%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투자세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속 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RA)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장 농업활동과 권장 식품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 자본공제는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축산물, 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농업활동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ACA)는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농업활동 영위증명서 또는 권장식품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농업공제(Agricultural Allowance)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한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에 따라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또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special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재배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기 공제가능 지출이 발생하는 한 계속 농업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서 4A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정한 최소면적의 경작 및 이용 요건을 충족한 농장은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동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는 채소,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프루트, 스타프루트, 구아바와 망고스틴), 괴경류, 근채류, 허브, 향신용 작물, 사료용 작물 및 수경재배 작물의 경작,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양식(지수식 양식, 육상 수조 양식, 수중 가두리 양식과 해면 가두리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조류 양식, 새우, 참새우, 어류의 부화, 그리고 특정 종의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 인센티브에 따라 위의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개인은 다른 수입원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공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잔여분을 과세연도의 후속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본 공제나 농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재배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건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건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1986년 투자진흥법에 의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세금감면기간이 개시 또는 만료되지 않은 회사는 이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감면

신선과일, 건조과일, 생화, 건조화(dried flowers), 관상식물, 관상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식품 냉장유통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냉장실과 냉장 냉동 트럭 시설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식료품의 수집과 처리와 같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장지역에 소재한 활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개척 자격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70%(권장지역은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②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등나무 (rattan)와 목재기반 제품 수출시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등나무 (rattan)와 목재기반 제품(제재목과 베니어는 제외)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태관광(eco-tourism)과 농업관광(agro-tourism) 등 관광 프로젝트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호텔업, 휴가 캠프(holiday camp) 건설, 하계캠프 등 휴양 프로젝트, 그리고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시설의 건설에 대해서는 이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호텔업이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 신규 호텔의 건설
- 기존 호텔의 확장/시설 현대화

가. 관광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

1) 개척 자격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 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소득액의 3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감면기간은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 생산일로부터 개시됩니다.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미사용 자본공제액은 이월하여 개척자격 기간이 종료된 후의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세 공제(ITA)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를 부여받은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공제받습니다.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사바 주와 사라왁 주에서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에 신규 투자하는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5년간 법정 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척 자격. 개척 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는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 전액에 대해 상계할 수 있다. 미사용 공제액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계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ITA).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에 대한 인센티브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적절한 시설 구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통합된 방식으로 독성 유해폐기물을 직접 보관, 처리, 폐기하는 업체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개척 자격 (5년 간 법정소득액의 7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의 부여, 또는
-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1) 에너지 절약 서비스 제공 회사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격. 개척 기간동안 발생한 미사용 자본 공제액과 누적 결손금은 개척 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이월하여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동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승인 후 1년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2) 에너지 소비 절감 실천회사

자체적으로 에너지의 소비 절감을 실천하는 회사도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86년 투자진흥법 상에서 연구개발(R&D)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소재, 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공정의 생산 또는 개선을 위해 연구 결과를 이용할 목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시행되는 체계적 또는 집중적인 연구로 다음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품질 관리 또는 소재, 장치, 제품 또는 생산물의 통상적인 시험
-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
- 통상적인 데이터 수집
- 효율성 조사 또는 경영 연구
- 시장조사 또는 판매 촉진

나아가 말레이시아의 보다 통합된 R&D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품의 설계(design)와 시제품 제작 작업(prototyping)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가.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 계약 R&D 회사

계약 R&D 회사, 즉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사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R&D 회사

R&D 회사, 즉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R&D 회사가 투자세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R&D 회사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계약 R&D 회사와 R&D 회사가 각종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수행하는 연구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
- ② 회사 수입에서 R&D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 ③ 제조업기반의 R&D의 경우 적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기술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회사 전체인력의 50% 이상일 것
- ④ 농업기반의 R&D의 경우 적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기술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회사 전체 인력의 5% 이상일 것

3) 사내(社內) 자체 연구개발

사업 발전을 위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하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5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R&D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기 1) - 3) 범주에 기재된 R&D 회사/활동은 한 차례 더 10년간의 개척 자격 부여 또는 10년간의 투자세 공제 혜택 중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공 부문 연구개발의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 연구기관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① 연구결과 상업화에 착수한 자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 ② 연구결과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상기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말레이시아인이 투자회사(지주회사; holding company)와 상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7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 회사가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 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 ③ 인센티브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연구결과가 상업화되어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 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된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또는 승인된 연구소, 승인된 연구

회사, R&D 회사 또는 계약 R&D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척자격을 부여받은 회사의 경우 세금공제 기간 중 발생한 승인된 R&D 지출은 누적이 가능하며 세금공제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말레이시아인 직원의 훈련 등 해외에서 수행된 R&D 활동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이중 공제는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원의 연구결과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둔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원들은 연구결과의 상업화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 간 5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연구는 과학기술환경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인적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 투자세 공제

기술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회사는 10년간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술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존회사도 훈련장비의 개량 또는 시설 및 훈련

능력의 확충으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이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회사는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훈련에 사용된 건물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승인된 훈련기관과 사내 훈련 프로젝트 외에 모든 사립고등교육기관도 실험 실습실 기자재, 작업실, 방송실, 어학실습실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기자재에 대해 수입관세, 판매세, 국내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면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비거주자(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정보통신 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 가속 자본공제

회사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기술 자산 취득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40%의 공제를 제공하는 가속 자본공제 (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과세연도부터 2013 과세연도까지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CT 장비 취득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웹 사이트 개발비용은 5년간 매년 20%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운영비용에 대한 공제

회사는 관리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IT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영비용(컨설턴트에 지급된 비용도 포함)에 대해 1회에 한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면제

ICT부문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법정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선박운항에 대한 세금면제

2012과세연도부터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70% 면제된다. 이 인센티브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선박”이라 함은 1952년 상선 해운령 개정안(Merchant Shipping Ordinance 1952(Amended))에 의거 말레이시아 선박으로 등록된 외항선으로 연락선 (ferry), 바지선, 예인선, 보급선, 선원용 선박, 거룻배, 준설선, 어선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선박’에 취업 승선한 모든 개인이 당해 승선근로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선사에 ISO인증 컨테이너선을 용선(임대)함으로써 비 거주자가 수령한 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나. 원동기와 트레일러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컨테이너 운송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동기(prime movers)와 트레일러(trailers)에 대해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한 · 말레이시아 조세조약

1. 한 · 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요
2.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3. 소득유형별 과세권 배분
4. 경감세율(제한세율)
5. 이중과세 방지
6. 무차별(차별금지)
7. 상호합의

1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요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은 한·말레이시아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1982년에 체결되고 1983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 특수관계기업간 부당거래 금지, 배당·이자·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이중과세 회피방법 및 상호합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므로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2 |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가. 인적범위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의 인적범위는 일방체약국 또는 쌍방 체약국의 인(人)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인(人)의 범위는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인으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합니다.

주의 할 사항은 조세조약은 양국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말레이시아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국법인의 말레이시아지점은 한·말레이시아 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적용대상 조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득할)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소득세와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등의 추가 소득세, 석유소득세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유형별 과세권 배분

가. 부동산소득

말레이시아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우리나라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소득의 범위에는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나. 사업소득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은 그 기업이 말레이시아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말레이시아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이윤은 말레이시아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됩니다.

다.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합니다.

라. 양도소득

말레이시아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우리나라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말레이시아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이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마.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에서 그러한 소득은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 ②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말레이시아국내에 체재하더라도, 말레이시아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말레이시아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말레이시아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문화적·예술적·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합니다.

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만약 그 고용이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 ①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국내에 체재하며,

- ② 그 보수가 말레이시아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③ 그 보수가 고용주가 말레이시아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 이사의 보수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말레이시아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아. 예능인 및 운동가

위 독립적·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와 같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국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사업소득, 독립적·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국에 대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방문이 우리나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해 말레이시아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

터 발생하는 보수나 이윤·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교수 및 교사

말레이시아국의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거나 말레이시아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말레이시아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연구가 어떤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로 수행된다면,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차. 학생 및 훈련생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고 단지 다음의 자격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또는 장학금에 관하여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① 타방채약국에서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의 학생
- ② 사업 또는 기술 견습생
- ③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연구 또는 조사의 주된 목적을 위하여 지급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

이 규정은 그러한 용역이 그 개인의 연구 또는 실제적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개인의 생계목적에 필요한 경우라면, 말레이시아국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를 뜻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 기타소득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거주자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말레이시아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발생되어 동 소득이 말레이시아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4 | 경감세율(제한세율)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은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경감세율 또는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가. 배당소득

- 1)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 2)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나. 이자소득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다. 사용료소득

- 1)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

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 2)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영용 필름과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 이중과세 방지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에서도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간주납부세액공제

간주납부세액공제란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말레이시아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

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로서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제도에 따라 허용되는 우리나라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다음을 한도로 합니다.

- 1) 배 당 : 배당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 2) 이 자 :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 3) 사용료 :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6 무차별(차별금지)

차별금지란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말레이시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레이시아정부는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여 더 무거운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합의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현지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 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우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신청하여 적정한 과세처분이 되도록 권한있는 당국간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1)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가)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나)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2) 신청절차

- 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 나) 상호합의 신청기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상호합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 ▶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3) 상호합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

채약상대국의 일반적인 불복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상대국의 과세처분기관(일선 세무서의 경우 조약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임)이 조세조약규정의 해석오류, 적용착오 등에 의한 과세처분은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보통 양국의 국세청이 담당함)간의 협의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사법당국인 법원이 조세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이지 못함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관행 및 전문적인 세법규정 적용의 정당성여부를 조세를 담당하는 당국간의 전문가들이 쟁점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채약국간의 상호합의제기에 의한 조세조약상의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 상호간의 세법적용에 대한 쟁점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향후 조세조약개정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조세조약 개정 전이라도 양국 국세청간의 잠정적인 과세기준이 정하여 짐으로써 공정한 과세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6 장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 PART I. 서문
- PART II. 독립기업 원칙
- PART III. 방법론
- PART IV. 비교가능성분석
- PART V. 사업구조재편
- PART VI. 특정거래
- PART VII. 증거서류

PART I

서문

1. 도입

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함)은 크게 이전가격 집행기준인 독립기업원칙에 근거를 두며, 이 독립기업원칙은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하에서 제정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일부분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직접 적용했음에도 소득세법 1967과 IRBM(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절차와 국내 환경들을 따르기 위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다른 일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때때로 재고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업법칙은 가이드라인을 이끌어가는 원칙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상황들을 다루면서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한 방법들의 적용을 결정하기 전에 각 상황들의 환경과 요소를 조사해야만 한다.

2. 목적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소득세법 140A조에 따라 2009년에 도입된 이전가격 법률과 소득세규칙(이전가격 관련) 2012(이하 “규칙”이라 함)와 조화를 이루면서, 2003.7.2에 제정된 IRBM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이다.

3. 범위

3.1 가이드라인은 적어도 한사람이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경우에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재화나 용역의 취득이나 공급과 같은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다.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a)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이 25백만RM을 초과하는 경우와 관계된 기업간의 거래총액이 15백만RM을 초과하는 경우에 완전히 적용된다.

(b) 개인이 재정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50백만RM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단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 위 3.1의 범위 외에 있는 개인의 경우, 모든 관련 사항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전가격 증거서류의 적용이나 25.4(a),(d) 그리고 (e)항에 따른 이전가격 증거서류 요구를 준수하는 것을 양자택 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은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나 독립거래결과에 가장 근접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3.3 위에 언급된 내용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서 세금이 부과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어질 개인 당사자들 간 거래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3.4 가이드라인은 또한 고정사업장(PE)과 고정사업장(PE)의 본점 또는 다른 관계된 지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와 관련하여 유추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위해 고정사업장은 본점이나 다른 지점들로부터 명확하게 독립된 기업으로서 취급될 것이다. 3.1항은 이 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규칙

4.1 소득세법 1967(ITA)의 140A조에 따르면 국세청장(DGIR)은 세금의 발생을 바꾸도록 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간주되는 특정거래를 무시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정을 한다. 따라서 140조에 따르면 DGIR은 독립거래가 아니라고 간주되는 거래를 무시하고 관계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바꾸도록 하

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한다.

4.2 2009.1.1부터 발효된 140A조는 특히 이전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조항은 납세자들이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더 나아가 DGIR이 가격이나 이자를 대체하거나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이나 정상이자율을 반영시키는 조정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고정자본 대가로서 초과한다고 간주되는 특수관계 재정지원에 대한 고려를 금지하는 조정을 허용한다.

4.3 또한 2009.1.1 발효와 함께 도입된 154(1)(ed)항은 재무장관에게 소득세 규칙 2012(이전가격)의 방법에 의한 140A조의 실시와 촉진과 관련된 범위와 절차를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5. 특수관계의 의미

5.1 ITA 139조는 특수관계로서 직접 및 간접적인 특수관계를 언급한다. 관련 법인 또는 같은 그룹법인(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언급함)에 대한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2(4)에서 설명하고 있다.

5.2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OECD가이드라인의 개념과 같음) 및 예시규정

PART II

독립기업 원칙

6.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6.1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독립기업 접근방법을 IRBM에서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이중과세를 최소화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6.2 독립기업원칙은 다음과 같이 OECD모델조세조약 9조1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두 특수관계회사들간의 상업적, 금융적 관계에 있어서 독립거래간에 성립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다른 조건이 아니었더라면 그 특수관계회사 중 어느 한 기업에 발생되었을 이익이 그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익은 그 기업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6.3 관계된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였을 때,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지배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6.4 특수관계거래와 비특수관계거래 사이의 차이점을 예시적으로 설명함.

6.5 본질적으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

7. 정상가격의 결정

정상가격의 결정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단계들을 따르며, 특별한 순서는 없다.

7.1 거래와 기능 분석

기능분석은 납세자의 사업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된 당사자들 간의 거래, 사업계획,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이해이다. 기능분석에 대하여는 9조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7.2 사업특성

사업특성은 특수관계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7.3 비교가능 거래의 식별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비교가능한 거래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7.4 분석대상 기업

특수관계거래의 결정은 분석대상 기업의 결정을 이끈다. 말레이시아 계획안에 의하면 IRBM은 분석대상법인과 비교대상 법인 모두에 대한 충분하고도 검증가능한 정보의 이용을 선호한다. IRBM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검증가능하지도 않은 경우 외국의 분석대상 법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7.5 정상가격산출방법(TPM)의 선택과 적용

정상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특별한 방법들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11조에서 논의한다.

7.6 수익성지표(PLI)

TPM의 적용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점은 이익과 판매 사이의 관계, 지불된 비용 혹은 사용된 자산을 측정하는 PLI의 선택이다.

8. 비교가능성 분석

8.1 비교가능성분석은 독립기업원칙을 따르는 모든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것은 독립거래에서의 조건들과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조건들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8.2 비교가능성분석에서 특수관계거래는 책정된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닌 거래일 것이라고 확인되어 온 거래를 말한다. 독립거래는 다음과 같다.

(a) 특수관계거래(내부비교대상거래)와 유사한 조건과 환경 아래에서 경영하는 독립기업과 분석대상기업 사이의 거래. 또는

(b) 유사한 조건과 환경들(외부비교대상거래) 아래에서의 두 독립기업 사이의 거래

9.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9.1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9.2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된 자산의 기능분석

9.3 계약조건

9.4 경제환경

9.5 사업전략

10. 비교가능성 조정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와 분석대상기업의 거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비교대상기업들이 정상가격결정을 위한 기초로써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확인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만 한다.

PART III

방법론

11. 정상가격산출방법

다음의 방법들은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i. 비교가능 제3자 가격(CUP) 방법
- ii. 재판매 가격 방법
- iii. 원가가산 방법
- iv. 이익분할 방법
- v. 거래순이익율 방법(TNMM)

처음 세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납세자는 어떤 방법이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상가격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iv)와 (v) 방법은 일반적으로 거래이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방법들은 다만 전통적거래방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전혀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진다. 이것은 비교가능한 데이터나 유용성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IRBM은 조정이 극히 적게 필요하거나 가장 신뢰할만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이것은 미래 분쟁의 범위와 본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a) 기능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결정되는 특수관계거래의 본질
- (b) 독립기업간의 거래와 비교할 때 실제 비교가능성의 수준
- (c) 독립거래에 관한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확성
- (d) 만들어진 가정에 대한 신뢰성
- (e) 만약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가정이 잘못된 경우, 조정이 영향을 끼치는 수준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과 거래이익방법 모두다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DGIR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11.1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CUP)에 대한 설명, 산출방법, 비교가능성 분석, 예시들

11.2 재판매 가격 방법에 대한 설명(OECD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같음)과 예시들

11.3 원가가산 방법에 대한 설명(OECD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같음)과 예시들

11.4 이익분할 방법에 대한 설명(OECD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같음)과 예시들

11.5 거래순이익을 방법(TNMM)에 대한 설명(OECD 가이드라인의 개념과 같음)과 예시들

11.6 전세계 공식배분방법

IRBM은 임의적이고 독립거래조건에 확실히 근접할 수 없는 기준에 근거를 둔 전세계 공식배분방법에 기초한 방법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전세계 공식배분방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전세계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비용, 자산, 급여 및 매출의 조합에 근거한 선결적이고 기계적인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PART IV

비교가능성분석

12. 비교가능기간

모든 납세자는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때에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세무목적에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상가격은 납세자의 특수관계거래가 이루어진 연도와 같은 연도 중에 수행하였거나 보증하였던 특수관계거래 값과 정상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되어야만 한다.

관련산업과 사건의 상황들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자료가 가장 신뢰성 있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분석대상기업의 회계기간이 2010.3.31에 끝나는 경우 2009.12.31.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동종업계 기업의 자료는 2010.12.31.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른 기업보다 더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2009.12.31.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기업의 경제적 환경이 분석대상기업의 경제환경과 더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다년도 자료

13.1 다년도 자료의 분석 목적은 특정연도의 결과가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년도 자료사용이 반드시 다년도 평균값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3.2 특수관계거래를 둘러싼 요인들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 전년도와 조사 다음년도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유용하다.

14. 정상가격 범위

정상가격범위는 특수관계거래의 독립거래 본질을 확립하는데 허용되는 계산범위를 말한다. 범위는 다중의 비교가능한 자료에 동일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산출한다. 이전가격 결정은 정밀한 과학이 아니며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산출된 결과값의 범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건의 요소들과 상황들은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15. 개별적인 거래와 결합된 거래

정상가격과 정상거래이익배분의 가장 정확한 근사값을 얻으려면, 독립기업원칙을 이상적으로 거래단위에 적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건의 상황에 따라 이전가격은 때때로 각각의 특정한 거래수준 보다는 제품라인이나 사업단위의 수준에서 다를 필요가 있다.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납세자들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각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들이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거래들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가격의 결정은 연관 거래들을 기초로 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결합된 거래들(예, 재화와 관련된 무형자산)에 대해 하나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 또는 유용한 양질의 자료를 찾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 개별적인 거래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상 관례라고 설명할 수 있다.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의 부족은 기업들 간의 관계나 관계의 복잡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액은 총계기준으로 한다.

16. 거래의 재평가

특수관계거래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설명된 정상가격산출방법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수행한 거래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들 사이에 계약을 검토할 때, 단지 계약의 조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상가격의 결정에 있어 IRBM은 다음 상황 하에서 특수관계거래를 무시하거나 재평가 할 수 있다.

- (a)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그 형식과 다른 경우
- (b)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같은 경우에도 거래에 관련하여 준비된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독립된 사람들의 경우에 채택하여 온 경우와 다르거나, 실제 구조가 IRBM이 적절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17. 이전가격 조정

DGIR이 특수관계거래에서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DGIR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나 이자를 대체하거나 귀속시킴으로써 그러한 거래에 대해 정상이자율이나 정상가격을 반영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조정은 또한 특수관계거래의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해당조정을 반영할 것이다.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질 것이다.

- (a)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독립거래 계약에서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받은 경우
- (b) 재화나 용역의 획득에 대하여 독립거래 계약에서 주거나 주기로 한 비용보다 더 준 경우
- (c)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관계된 사람에게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8. 손실

관련회사가 지속적으로 손실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수익을 적절하게 받아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손실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수관계거래가 상업적으로 실재적 거래인지 여부와 경제적 판단력을 가진 거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는 이러한 손실이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PART V

사업구조재편

- 19.** 다국적 그룹내에서 사업구조재편은 종종 사업특성화의 변화나 지역 기업의 이익감소를 가져온다. 그러한 이익감소는 수행기능이나 부담해야할 위험 및 사용된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국적 그룹내에서 현지법인이 계속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수익성이 감소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IRBM은 필요한 조정을 할 것이다.

PART VI

특정거래

20. 그룹내 용역제공

그룹내 용역제공은 그룹내에 있는 다른 법인들의 이익을 위해 다국적 그룹 내의 하나 혹은 더 많은 법인들에 의하여 제공된 용역을 말한다.

다음의 표는 세금이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용역의 종류를 요약한 것이다.

| 용역 종류 | 과세 | 비과세 | 적요 |
|---------------------------------|----|-----|--|
| 특정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중앙 집권적 용역 | ○ | | |
| 부수적 용역 | ○ | | |
| 주주활동 | | ○ | |
| 이중 용역 | | ○ | 일시적인 이중 용역 (예, 새로운 시스템의 초기 수행단계 중 현시스템의 사용을 유지하는 것) |
| 우발적인 이익을 제공한 용역 | | ○ | |
| 부수적인 이익 (큰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받는 이익) | | ○ | |
| 요구(on-call)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대기비용) | | ○ | 독립된 사람이 그런 대기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그룹내 용역제공을 위한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 그룹내 용역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들은 다음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 (i)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 (ii) 만약 그렇다면, 이런 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

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의 결정

- 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만 한다. 정상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자는 이익평가와 함께 외부의 CUP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용역 제공자의 경우에는 CUP방법과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을 적용할 수 있다.
-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a) 용역의 본질
 - (b) 가치/제공받은 용역의 이익범위

- (c)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자에 의해 부담된 비용
- (d) 용역을 제공과 관련된 기능들
- (e) 독립된 수혜자들이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용역에 대하여 지불할 총금액
- (f) 다른 조건들이 수혜자들에게 실제로 유용한지 여부

21. 원가분담약정(CCA)

21.1 원가분담약정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에서의 CCA 개념과 동일

21.2 원가분담약정의 종류

실무상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CCA의 주요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i)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약정

이런 약정에서 각각의 참여자는 다른 자산, 자원 그리고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공헌정도에 따라 개발된 자산의 권리를 분배받는다.

(ii) 서비스 약정

CCA는 비용과 위험의 배분이나 공동투자를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각 참여자들의 시장에 공통적인 광고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자원모으기 (POOL)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서비스 약정이, 생산-개발-획득된 어떤 재화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그룹내 용역제공에 대하여 그 서비스 약정이 CCA로 기술되었든 아니든지 간에 독립기업원칙들을 적용할 것이다.

21.3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CCA가 독립거래의 약정을 따랐는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 아래 요소들을 검토해야만 한다.

(a) CCA는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가진 상식적이고 실제적인 사업판단을 가지고 조사되어야 한다. 독립기업이라면 기대이익보다 기여가치가 클 경우 CCA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약정으로부터 얻어지는 기대이익의 평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i)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추가이익이나 기대되는 비용절감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거나,

(ii) 적절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계산

(b) 약정의 조건은 진실되고 경제실질과 일치시켜서 이루어져야 하며, 알려진 상황에 대한 참고사항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약정에 참여하는 때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 해야 한다.

22. 무형자산

22.1 무형자산이란 지식가치가 있는 독특한 생산품이거나,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무형의 콘텐츠이다. 무형자산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무형자산 분류에 따름)

- (a) 사업 무형자산
- (b) 마케팅 무형자산

22.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22.2.1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산출은 양도자(사용허여권자)와 양수자(사용자) 모두의 관점을 반영해야만 한다. 양도자는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된 비

용을 회수하고 적당한 수익을 벌 것이다. 양수자에게 무형자산의 가치는 무형자산이 발생시키는 기대이익일 것이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간 무형자산의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각 당사자들의 기여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거나 거래의 비교가능성을 결정할 때, 총액, 본질, 무형자산 유지와 개발비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려해야할 다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a) 기대이익과 무형자산의 유용성
- (b) 일반적인 산업요율
- (c) 권리행사 가능지역의 제한, 계약조건, 특허권 존속기간, 권리의 만료나 양도 그리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 계약의 조건들
- (d) 사용허여권자의 이익
- (e) 권리의 재사용 허여 가능성
- (f) 자본투자나 개업비용(start-up cost) 및 개발작업
- (g) 무형자산의 갱신·개정 또는 수정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
- (h) 특허사용과 함께 제공받는 기술적 지원, 상표 그리고 노하우

22.2.2 무형자산을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

- (a) CUP방법은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을 수반하는 벤치마킹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독특성에 근거한 신뢰할만한 비교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큰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양 당사자들 간에 잔여이익분할방법이나 가장 비교가능성이 큰 다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 (b)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한 정상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무형자산의 사용자 혹은 양수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 다음을 포함한 기능분석을 함
 - ㉠ 무형자산의 종류

- ③ 무형자산의 가치
 - ④ 필요한 경우, 무형자산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 ⑤ 무형자산의 가치가 기대되는 존속기간
- (ii) 재무분석을 통해 로얄티 총비용에 상응하는 회수율을 결정함
- (iii) 지불한 제 비용이 경제적 의미를 가져야하며 특수관계자의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을 얻는 것이어야 함

23. 그룹내부 자금조달

23.1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재정지원

그룹내부 자금조달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또 다른 형태의 용역제공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40A(2)에서 나뉘어진 것으로서 재정지원의 형태는 대부, 신용거래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보안이나 보증에 대한 조항이 있다. 특수관계자간 재정지원거래는 다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a) 납세자가 대가를 수반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정지원을 얻는 경우
- (b) 납세자가 대가 수반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23.2 정상이자의 결정

정상이자는 독립된 개인들 사이의 거래나 비특수관계 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했어야 할 이자이다.

재정지원에 대한 정상이자의 결정에서 CUP방법은 가장 신뢰할만한 측정방법으

로써 검토된다. 이와 관련해서 CUP방법은 매우 유사한 조건과 상황을 가진 대출에 대한 독립당사자간 이자율과 관련된 정상이자를 결정한다. 차이점이 존재할 경우 이런 차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정상이자율을 확인할 때,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자율인 쿠알라룸푸르 국제은행 이자율(KLIBOR)과 같은 이자율이나, 비교가능한 대출에 대한 은행에서 실제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자율을 사용한다.

PART VII

증거서류

24. 자료보관

납세자는 DGIR이 사업손실이나 이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서 수익을 얻은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7년동안 법 제 82(1)(a)항에서 언급하는 충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 82(8)조는 더 나아가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과 관계된 모든 자료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보관유지 되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시행령 82(9)조에서 규정한 자료는 회계장부, 송장(INVOICE), 전표, 영수증 그리고 회계장부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다른 서류들을 포함한다.

25. 이전가격 서류

25.1 이전가격서류의 적시작성

(a) 만약 자료를 다음과 같은 때에 준비했다면 자료는 적시작성 되었다고 간주된다.

- (i)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이전가격 정책이나 합의를 충족시키거나 그것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 때
- (ii)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에 우선시하여 재검토하거나 과세 기준연도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무신고를 준비하는 때

25.2 이전가격 증거서류 준비의무

위 24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관계거래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적시작성된 이전가격증거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특수관계거래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원재료의 판매나 구입, 주식거래 또는 다른 유형자산
- b. 로열티, 특허비용, 무형자산 사용과 관계된 모든 종류의 대가
- c. 재정, 경영, 마케팅 그리고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비용
- d. 연구, 개발
- e. 위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서비스들
- f. 자산의 임대와 임차
- g. 이자
- h. 보증료

25.3 이전가격 증거서류의 제출

이전가격 증거서류는 연례세무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IRBM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5.4 증거서류 목록

증거서류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조직구조
- (b) 그룹 재무보고서
- (c) 사업의 본질과 산업 및 시장의 상황
- (d) 특수관계거래
- (e) 가격정책
- (f) 가설, 전략 및 가격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관련된 정보
- (g) 비교가능성, 기능 및 위험분석
- (h)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i)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25.5 증거서류의 승인

적시성 있는 이전가격 서류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합리적 노력이 요구된다.

- (a) 이전가격 분석
- (b) 증거서류 보관
- (c)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증거서류의 준비
- (d) 독립거래이전가격정책 이행과 검토, 사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전 가격 정책의 재설계
- (f) 독립거래에 명백하고도 밀접하게 접근
- (g) 기능, 자산, 위험, 시장상황, 사업전략의 구체적인 분석
- (h) 규칙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 (i) 기업, 제품 그리고 시장특성에 관하여 실제적이고, 경제적이며 경험에 근거를 둔 설명
- (j) 이전가격 증거서류는 정확하고 엄밀해야 하고 회계, 재무 및 기준 자료/비교 대상과 일치해야함
- (k) 타당한 사실을 기초로 한 조정이 고려되도록 다국적기업의 수행을 방해했을 지 모르는 특정사건을 강조하고 문서화함

- (l) 상대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환전하거나 적절하게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증거서류의 준비를 금지함
- (m) 적절한 증거서류와 완전한 자료를 보존함

26. 벌금

26.1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조정으로써 시행령 113(2)의 부과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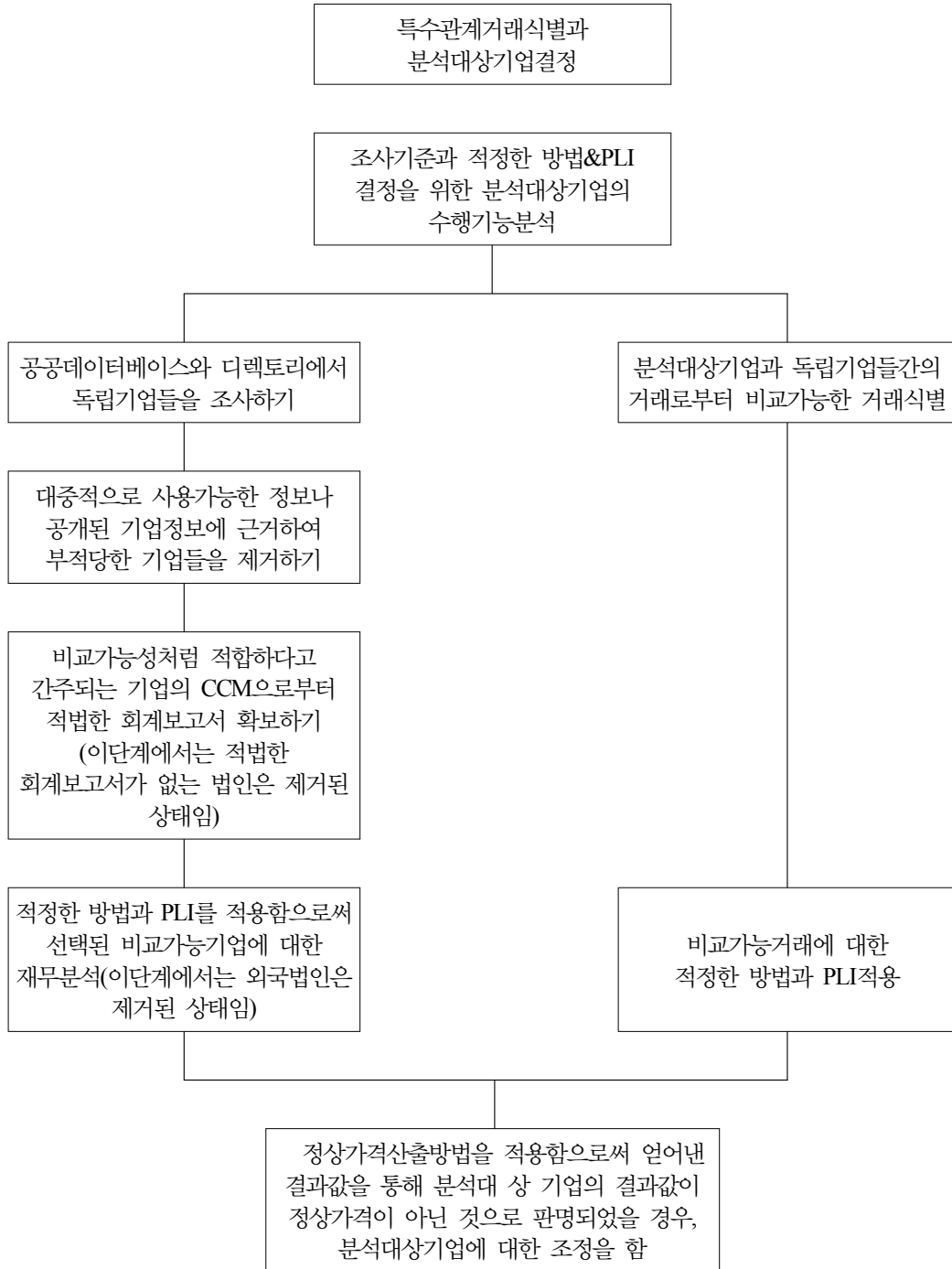
| | | |
|---|------------------------------------|-----|
| 1 | 적시성 없는 이전가격 증거서류 | 35% |
| 2 |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이전가격 증거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 25% |

26.2 3항의 범위 아래 있고 적시성 있는 이전가격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독립거래가 아닌 거래로 인한 조정으로써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6.3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 부과율은 이전에 위반하여 부과된 지난번 벌금 부과율 대비 20% 증가되어야 하나 세전 총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a) 납세자가 이전가격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b) 납세자가 지난번 이전가격 조사 후에 독립기업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교가능성 분석



제 7 장 APA가이드라인

PART I. 서문

PART II.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PART III. APA의 적용

PART IV. APA 신청서 처리

PART V. 양자간/다자간 APA의 신청

PART VI. APA의 법적 효력

PART VII.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집행

PART VIII. APA 정보의 사용, 공개 및 보호

PART IX. 그 밖의 사항들

ADVANCE PRICING ARRANGEMENT GUIDELINES 2012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이드라인 2012

가이드라인은 소득세법 1967의 법 제138조와 소득세법(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규칙 2012의 절차적, 행정적인 요구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IRBM, MTA(Multinational Tax Department)에 의해 만들어졌다.

PART I

PRELIMINARY(서문)

1. 서론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이하 “APA”라 함)는 특정 조건과 상황 하에서 특정기간에 걸쳐 납세자와 납세자의 외국 관계사들 사이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 예상되는 정상이전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확립하는, 납세자와 DGIR 간의 또는 권한있는 과세당국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2. 목적

APA 가이드라인은 납세자가 DGIR이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APA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나 APA가 진행되고 집행되어질 방식을 설명한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PE는 (가정상으로) 본사나 다른 관계 지점들로부터 뚜렷하게 구별된 기업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3. 관련조항

APA의 이행을 위한 관련 조항들은 소득세법 1967(이하 “법”이라 함)에 소개되어 있다.

3.1 법138C조는 APA의 적용을 위해 관계된 사람들과 국외 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조문은 더 나아가 APA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규정된 양식을 제공한다.
(일방적 APA의 경우 APA 1양식, 쌍방간/다자간 APA의 경우 APA2 양식)

3.2 법132조는 권한 있는 과세당국을 포함한 쌍방간/다자간 APA에 적용된다.

3.3 154(1)(eb)항에 의하여 재무장관은 소득세법 규칙 2012(APA)(이하 “APA규칙”이라 함)의 방법으로 APA와 관련한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다.

2009.1.1부터 효력이 발휘된 APA규칙은 APA 범위와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

3.4 소득세법규칙 2012(이전가격) 140A조와 IRBM 이전가격가이드라인 2012는 APA에 관해서 정상가격 확인을 언급하고 있다.

4. 적용대상

자료의 충분한 사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APA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된다.

(a) 납세자는 법에 의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상, 앞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납세자는 또한 고정사업장(PE)을 포함한다.

- (b) 거래총액이 1억RM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c) 신청한 대상거래의 가치가,
 - (i) 매출의 경우, 거래총액의 50%를 초과해야함
 - (ii) 매입의 경우 총매입액의 50%를 초과해야함, 또는
 - (iii) 기타 거래에 경우 총거래액이 25백만RM을 초과해야 함
- (d) 모든 대상거래는 과세소득과 관련되어야 하며 비과세 소득이 아니어야 한다.
- (e)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IRBM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2의 3.1(b)항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5. 계약 당사자(서명권자)

5.1 일방적 APA는 납세자와 DGIR사이에 계약한다.

5.2 BAPA/MAPA는 말레이시아 CA와 다른 나라의 CA(s) 사이에 계약한다.

6. 권한있는 과세당국

권한있는 과세당국(CA)은 재정장관이나 장관이 인정하는 대표부에 의해 임명된다. 현재 인정된 CA는 다음과 같다.

- (a) Head of Tax Analysis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세무분석부서의 장 및 재정부장관
- (b) Director General of Inland Revenue (DGIR); 국세청장
- (c) Deputy DGIR of Compliance; 납세협력의 국세청 차장

(d) Deputy DGIR of Policy; and 정책에 대한 국세청 차장 그리고

(e)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axation, IRBM.

IRBM 국제조세부의 국장 또는 IRBM

PART II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7. 개관

가이드라인에서 이전에 언급했던대로 APA는 특수한 국외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을 결정하거나 소득의 미래분배나 할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결정한다.

8. APA 장점

APA는 미래 일어날 거래를 다루기 때문에, 납세자는 APA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는다.

8.1 거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TPM에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세무처리에 있어 예측성을 증가시킨다.

8.2 양자간 혹은 다자간 APA를 통해 모든 이윤이 정확하게 배분되고 과세된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잠재적 이중과세를 피하고 제거한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항상 양자간(다자간) APA를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8.3 세무조사의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전가격분쟁에 대한 조사를 줄여주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줄여준다.

8.4 납세자가 세금부담을 포함한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8.5 납세자가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기록보존의 부담을 줄여준다.

9. 계약범위

APA범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납세자와 외국관계사들
- (b) 대상이 되는 국외거래
- (c)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
- (d) APA의 기간
- (e) 중대한 가정
- (f) 기타 합의된 규정과 조건

PART III
APPLICATION FOR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의 적용

10. APA 진행과정

일반적인 APA를 적용하는 전 과정은 일반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반면 BAPA나 MAPA의 신청은 1년에서 2년이 걸린다.

APA를 시작하는 납세자는 다음 과정을 필요로 한다.

- (a) 예비회의
- (b) 규정된 서식을 사용한 신청서 제출
- (c) APA의 진행
- (d) APA의 서명
- (e) APA의 연레이행보고서 제출

11. 예비 회의

11.1 APA 적용에 우선하여, 납세자는 예비회의를 위해 IRBM의 MTD에 서면요청 하여야 한다.

이 요청은 신청한 대상기간의 초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However, taxpayers are highly encouraged to have a preliminary discussion with IRBM to prepare for the pre-filing meeting.

그러나 납세자가 예비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IRBM과 예비검토를 갖도록 권장한다.

11.2 예비회의의 목적은 APA 적용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의는 납세자가 APA 적용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차례 회기동안 진행될 것이다. 토론할 이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APA가 일방적적인지 아니면 양자간/다자간일지
- (b) 대상 거래의 성격과 범위
- (c) 신청한 TPM과 관련된 주요 가정들
- (d) 신청한 비교대상과 결과 예측범위에 대한 설명
- (e) APA 대상기간
- (f) 요청서류들
- (g)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
- (h) 독립된 외부전문가를 위한 예상되는 필요
- (i) 예상되는 소급적용
- (j) 예상되는 발생비용
- (k) APA결과로서 납세자의 의무
- (l) 다른 관련 이슈들

11.3 예비회의의 서면요청은 다음을 포함한 납세자의 적시성 있는 이전가격 증거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 (a) 이름, 주소, 납세자의 세무파일 참고자료 또는 신청한 APA의 모든 당사자(말레이시아와 해외 양쪽모두)
- (b) 신청한 대상거래
- (c) APA 대상기간
- (d) 지분구조, 조직도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능적 측면을 포함하는 납세자의 상세 정보

- (e) 사업의 본질, 산업환경과 세계조직구조 등 납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f) 각 독립법인에 대한 기능 분석, 근거를 가지고 신청된 TPM의 세부사항과 분석
- (g)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결과값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분석
- (h) 신청한 TPM과 분석에 따라 영향을 주게 될 주요한 가정에 대한 기술과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에서 사용되어졌을 사건들
- (i) 유사한 신청의 증거나 BAPA/MAPA의 신청을 위한 외국 법인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 다른 필요한 정보

11.4 납세자에게는 일방적 APA인 경우 예비회의의 결과를 마지막 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BAPA/MAPA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 사례가 APA를 위해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15항 아래에 설명된대로 표준 APA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주요가정

11.3(h)에 언급된대로 주요가정은 신청한 TPM을 진전시키는데 특별히 중요하다.

이것은 고려중인 거래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운영상의 그리고 경제적 조건상에서의 가정이다.

주요 가정은 합의된 거래에 영향을 주는 정부법과 규칙, 사업활동과 시장조건의 변화에 연관성이 있다.

13. 대상기간

APA규칙은 대상이 되는 기간이 최소 3년이고 최대5년이라고 규정한다.

14. 독립한 외부전문가에 의한 의견

예비회의에서 독립한 외부전문가에 의한 의견이 APA 신청에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자신의 비용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납세자, DGIR, CA 등을 구속할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외부전문가는 법에 의한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15. 신청서 제출

15.1 APA 신청은 일방적 APA의 경우 APA1서식을 사용하고 양자간 APA의 경우에는 APA2서식을 사용하여 IRBM으로부터 예비회의에 대한 통지수령 후 2개월이내 제출되어야 한다.

15.2 상기 언급된 양식은 IRBM 웹사이트(<http://www.hasil.gov.my>)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APA, MTD, IRBM로 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15.3 완성된 상기 서식은 APA 신청자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 서명되어야 한다.

15.4 모든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한다:

※ 주소 : Multinational Tax Department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Headquarters
Advance Pricing Arrangement Division
Level 16, Menara Hasil
Persiaran Rimba Permai
Cyber 8, 63000 Cyberjaya, Selangor.

15.5 APA 신청서의 모든 문서는 영어/Bahasa Malaysia로 제출되어야 한다. 영어/Bahasa Malaysia 외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것은 영어/Bahasa Malaysia어로 된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동반해야 한다.

PART IV

PROCESSING AN APA APPLICATION

APA 신청서 처리

16. APA 신청 진행 중에, DGIR은 대체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고, 신청된 APA의 범위를 제한 또는 확장할 수 있고, 신청서를 거절할 수도 있다.

17. 신청서 검토, 분석, 평가

17.1 일반적으로 APA검토과정은 다음 활동에 의한 신청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다.

- (a) 사업과 관련 산업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사이트를 방문한다.
- (b)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회의는 TPM선택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APA 신청서의 근간이 되는 사실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17.2 검토과정이 완료되면 납세자는 신청 상태에 대해 통지 받을 것이다.

18. 신청 과정 완료

18.1 검토단계를 공식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신청자의 공동 작업, 사건의 복잡성 그리고 제공된 정보의 완전성과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18.2 APA는 모든 거래 당사자에 의해 규정과 조건이 확정되고 합의되면 체결될 수 있다.

19. 신청의 거부

19. 아래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DGIR은 신청서를 거부 할 수 있다.

- (a) 소득세(이전가격) 규칙 2012와 IRBM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 2012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용하는데 실패. 즉 국외 거래를 수행하는데 독립기업원칙을 준수하지 않음
- (b) 가정의 상황에 근거로 한 대상거래 혹은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APA를 신청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 대상거래
- (c) 제안된 거래의 제한된 성격과 가치 때문에 APA를 따르기 위한 자원사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제안된 거래에 대하여 독립기업원칙이 중요한 결점 없이 신뢰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d) 신청한 APA에 대한 문제가 법 99조에서 다루는 대상인 경우; 또는
- (e) 신청한 대상거래가 세금 회피 방식을 포함하는 경우.

19.2 신청서가 거부 될 경우, 납세자는 거부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을 것이다.

납세자는 다음 DGIR의 후속 결정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30일 이내에 더 항소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0. 신청서의 철회

20.1 납세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절차진행 말기의 철회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의 철회는 필연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

20.2 신청의 철회는 MTD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ART V

APPLICATION FOR BILATERAL/MULT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양자간/다자간 APA의 신청

21. BAPA/MAPA에 대한 권장

21.1 국외거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IRBM은 BAPA에 대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그러한 양자간 협정은 APA에서 대상으로 한 이전 가격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양국의 세무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을 주므로 잠재적 이중과세를 피한다.

21.2 BAPA의 신청에 대해, 10항에서 20항까지에 규정된 조항들을 또한 적용한다.

22. DTA 파트너와 협상

22.1 말레이시아 CA(권한있는 과세당국)는 논의할 조약파트너의 CA(s)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협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관련 Double Tax Agreement(DTA)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조항에 따라 APA에 대한 특정 문제들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다.

CA(s) 간 대면회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기간 내에 BAPA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다.

PART VI

LEGAL EFFECT OF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의 법적 효력

23. APA에 구속력있는 당사자들

APA는 APA에 명시된 모든 자격에 따라, APA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24. APA의 규정과 조건

납세자가 협정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는 한, APA에 속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된 TPM의 적용은 APA 대상기간 동안 다툼이 되지 않을 것이다.

PART VII
ADMINISTERING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집행

25. 소급적용

적용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되거나 대상기간 이전 연도들을 둘러싼 사실과 상황이 대상기간의 사실, 상황과 대체로 동일한 경우에만, 대상기간 이전 연도들에만 소급적용이 될 것이다.

소급적용조정은, 적용 가능한 경우, APA의 체결과 관계된 모든 연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26. APA 연례 준수 보고서 제출

APA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는 연간 세무신고는 물론 APA 연례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과세기준년도를 구성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APA 부서인 다국적 세금 부서(MTD)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이 보고서는 APA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했는지를 검토될 것이다.

26.2 연례 준수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과세연도에 대한 적정하게 회계감사받은 아래 각 해당자의 재무제표 한 세트,
 - (i) 납세자, 그리고
 - (ii) 외국 법인 (BAPA / MAPA의 경우)

- (b) BAPA / MAPA의 경우에, 납세자 및 외국법인 각 당사자가 보고해야하는 총

액 간의 차이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 대상이 된 거래에 관한 과세연도의 재무제표 상 자세한 보고와 분석

- (c) 재무상 중대한 변경에 대한 설명이나 APA에 제정된 방법이나 원칙과 다른, 대상거래에 관하여 과세연도에 사용된 세무회계 방법이나 원칙들 금융 또는 세금 회계 방법이나 원칙들

납세자의 의견에서, 그러한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d) 중요한 가정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 기술 만약 가정이 충족되었다면, 그 효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중요한 가정의 계속 되는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 (e) 대상거래에 대한 TPM의 신청을 설명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와 계산 및 과세연도에 TPM을 적용한 결과값

- (f) 적정한 세금산정에 관하여 APA 에서 요청하는 보상조정이나 보상조정 이후에 대한 분석, 그리고

- (g) 납세자와 외국 기업 (BAPA / MAPA의 경우 해당)의 특정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다른 항목

26.3 이 연례 준수보고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APA는 취소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27. 연례 준수 검토

IRBM 다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APA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 (a) 납세자가 APA에서 규정한 규정과 조건을 정확히 준수해 왔는지 여부
- (b) APA에서 중요한 설명, 관련 제출물 그리고 정기적인 APA 보고서가 유효하며 정확하게 납세자의 사업운영을 기술하는지 여부
- (c) 납세자가 APA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합의된 TPM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d) 합의된 TPM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와 계산은 모든 중요성의 관점에서 정확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 (e) APA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가정은 유효하고 적절하다.

28. 조정

28.1 조정에 관한 계약의 조건은 사례별로 결정된다.

28.2 납세자는 보상거래의 결과가 APA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연례 세무신고의 보상 조정을 하게된다.

28.3 납세자 보상 조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IRBM은 적절한 조정을 할 것이며, 법 113(2)조에 근거하여 상향 보상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다.

29. APA의 개정

29.1 APA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30일 이내에 DGIR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주의점은 개정안에 대한 이유와 관련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29.2 APA는 다음 이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 외부 환경으로 인해 중요한 가정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i) 납세자의 사업 활동은 일반판매업자에서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ii)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b) APA에 영향을 미치는 법 132조에 따른 법률 또는 협정의 변화

(c) 외국의 과세당국이 참여하는 APA가 일관성이 없거나, 개정, 철회, 취소된 경우

29.3 납세자와 DGIR은 개정된 일방적 APA에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APA에 관한 납세자와 DGIR의 협정에 대하여 납세자는 그 새로운 협정의 효력발생일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것이다.

29.4 BAPA와 MAPA의 경우에, 납세자와 CA가 APA를 개정하는데 동의할 경우, 다른 관련 CA(s)에게 개정된 APA에 대하여 통지된다. 개정된 BAPA / MAPA는 CA(s)의 합의에 의해 적용된다.

30. APA의 철회 및 취소

30.1 DGIR 또는 CA에 의한 APA 철회

30.1.1 APA의 철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 (a) 납세자 또는 대상거래에 관련된 다른 사람이 APA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b) APA 신청서, 연례 준수 보고서 또는 APA 당사자들의 대상거래에 대한 연장 신청서 상의 오류 또는 실수가 있는 경우
- (c) APA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보, 증거서류 및 준수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d) 개정된 일방 APA, BAPA 또는 MAPA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e)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30.1.2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철회사실을 통보할 것이다:

- (a) 철회사유
- (b) 철회 효력발생일 (30.1.1항에 언급된 상황에 관한 과세기준연도의 시작일부터 임)

30.2 APA의 취소

30.2.1 납세자가 APA 신청서, 보고서 또는 갱신 신청서에 허위, 사기, 누락 또는

허위가 있거나 또는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 있는 경우, DGIR 또는 CA는 APA를 취소 할 수 있다.

30.2.2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을 통보할 것이다.

- (a) 취소사유
- (b) 취소의 효력 발생일(대상기간의 첫날부터임)

31. APA의 갱신

31.1 A request for renewal of an APA should be as follows:

다음 각 호에 따라 APA 갱신요청을 하여야 한다:

- (a) 기존 APA의 기간만료 전 6개월 이내 요청하여야 한다.
- (b) 갱신된 정보 및 11.3항에 명시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APA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이전 APA와 유사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갱신 할 수 있다.

- (a) APA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상황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 (b) 중요한 가정이 유효하고 적절한 경우
- (c) 납세자가 이전 APA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31.3 DGIR 또는 CA는 요청에 대한 결정내용과 그 근거에 대하여 서면으로 납세

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32. 신규 신청

납세자는 다음 상황으로 인하여 만료된 APA의 갱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 10-20항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APA를 신청할 수 있다.

- (a) 보상 거래가 변경되는 경우
- (b) 보상 거래의 사실과 상황에 중대하고 예상된 변화가 있는 경우
- (c)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신청하는 경우

PART VIII

USE, DISCLOSUR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APA 정보의 사용, 공개 및 보호

33. 정보의 비밀유지와 공개

- (i) APA 진행과정 중 DGIR 또는 CA에 의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법의 비밀유지 조항 및 법 제 132조에 따라 만들어진 협정의 정보교환 조문의 적용을 받는다.
- (ii) 세무상 규정준수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APA 하의 대상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실시 할 수 있다. APA가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전

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PART IX

OTHER ISSUES

그 밖의 사항들

37. 처벌

37.1 APA가 유효하고 납세자가 APA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는 한, 대상기간 동안 대상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967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37.2 그러나, APA 신청결과로써 과세연도들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른 가산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제 8 장 부록

유관기관

유관기관

말레이시아 재경부(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Complex

No. 5 Persiaran Perdana

Presin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2 WP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82 3000, Fax : (603) 8882 3893 / 8882 3894

Website : www.treasury.gov.my

말레이시아 국세청(INLAND REVENUE BOARD)(본부)

Headquarters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Level 18, Menara Hasil

Persiaran Rimba Permai

Cyber 8, 63000 cyberjaya

SELANGOR.

Tel : (603) 83-138888, Fax : (603) 83-137801 / 83-137806

Website : www.hasil.org.my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uruhanjaya Syarikat Malaysia(ROB)

Tingkat 16, Sunway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622 Kuala Lumpur.

Tel : (603) 4043-0811, Fax : (603) 4043-0832

Website : www.ssm.com.my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MIDA)

MIDA Sentral, No.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267-3633, Fax : (603) 2274-7970

Website : www.mida.gov.my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투자부(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서울사무소)

17FL, SC First Bank B/D, 100 Gongpyong-dong, Jongro-gu, 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Tel : (822) 733-6130 / 733-6131, Fax : (822) 733-6132

Website : www.malaysia.or.kr/mida/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TRADE)

7th Floor, Wisma Sime Darby (West Wing), Jalan Raja Laut
5035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694-7259, Fax : (603) 2694-7362

Website : www.matrade.gov.my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상무부(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서울사무소)

Embassy of Malaysia(Trade & Investment Section)

17th Floor,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
47, Chongro, Chongro-gu

Seoul 110-702, Korea

Tel : (822) 739-6813 / 739-6814, Fax : (822) 739-6815

Website : www.malaysia.or.kr/matrade/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No. 9 & 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 4251-2336, Fax (603) 4252-1425

영 사 : Tel (603) 4251-4904, Fax (603) 4251-9066

주말레이시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KOTRA)

9th Fl., Menara Hap Seng (Formerly known as Mui Plaza)

Jalan P. Ramlee, 50250 KL, Malaysia.

Tel : (603) 2117-7100, Fax : (603) 2142-2107

Website : www.kotra.or.kr/KBC/kualalumpur/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07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 세 청 고객만족센터 국제조사관 김남중
중부지방국세청 조 사 1 국 국제조사관 이보라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국제조사관 이승환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07)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